

신길 AK 푸르지오 도시형 생활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건본주택 운영 안내

• 건본주택 운영 안내

- “신길 AK 푸르지오”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건본주택 관람(방문 사전 예약)과 당사 홈페이지의 사이버 건본주택 <https://www.prugio.com/hc/2021/singil>을 병행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 건본주택 방문 사전 예약제는 일일 방문객수와 시간별 방문객수를 한정하여 방문 예약하신 분께 예약된 일자와 시간에 건본주택을 관람하도록 합니다.
- 공급계약체결은 건본주택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 공급계약체결일에 건본주택 방문 시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본인 1인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동행자 동행불가 / 대리인 위임 시 대리인 1인만 입장 가능)

• 건본주택 방문 사전 예약제 안내

- 건본주택 관람 및 공급계약 체결 등 건본주택 방문 시 당사 홈페이지의 사이버 건본주택 (<https://www.prugio.com/hc/2021/singil>)에서 방문 일자 및 시간을 예약 후 내방하시기 바랍니다.

• 건본주택 방문시 아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입장이 제한됩니다.

- 마스크 미착용, 손 소독제, 비접촉 체온계, 소독 발판 등 예방 절차에 불응할 경우
- 기타 진행요원의 안내에 따르지 않는 경우
- 비접촉 온도계 및 열화상 카메라를 통한 체온 37.5도가 넘을 경우
- 기타 건본주택 운영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 발열이나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나타나는 유증상자는 건본주택 방문이 불가합니다.

※ 사업주체가 고지한 기간 및 운영시간 외, 건본주택 방문이 불가합니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상황 및 정부정책에 따라 건본주택 관람, 공급계약체결 등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개별통보 예정입니다.

※ 대표전화(1800-2799)를 통해 분양광고와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위해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간혹 모든 상담원이 상담중으로 다소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 전화상담 시 신청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전달로 인해 청약관련 착오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청약과 관련된 전화상담은 청약신청 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신청 시 분양광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관련서류를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도시형 생활주택(이하 “공동주택”이라 함)은 2021.07.0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되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당사 대표번호 (1800-2799) 또는 당사 홈페이지(<https://www.prugio.com/hc/2021/singil>)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공동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제9호에 따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5조, 제16조, 제18조, 제19조제1항,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32조제1항 및 제59조에 의한 규정만을 적용합니다.

■ 본 공동주택 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내용 미숙지로 인한 착오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공동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1.11.05입니다. (청약자격의 기간, 나이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임)

■ 본 공동주택의 건설지역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는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으로서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전매제한이 적용됩니다.

■ 청약자격 : 본 공동주택은 거주지역 및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청약 신청 가능하며,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에게 공급합니다.

■ 중복청약 유의사항 : 1인당 군별 1건 청약 가능하며, 동일인이 군별 2건 이상 중복 신청하는 경우 청약신청 전부가 무효처리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한 공동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접수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매제한 : 본 공동주택은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에서 분양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으로서 「주택법」 제64조에 의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10년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의 기간(이 경우 그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 전매행위 제한기간은 5년)]까지 분양 받는 자의 지위 또는 건축물의 전매(매매, 증여, 그 밖에 권리가 변동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은 제외)를 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습니다. 만일 이를 어길 경우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주택법」 제101조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의무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 하여야 함.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 한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인지세(가산세) 및 제세공과금 등은 계약자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 분양계약과 분양권 권리의무승계(전매)계약도 인지세 과세대상이며, 분양 계약 시 전자수입인지를 구입하여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인지세법 등 관련법령의 인지세 가산세 개정(2021.01.01)으로 인지세를 미납부한 경우 계약일 경과에 따라 최고 30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분양 계약일 전 정부수입인지를 구입하여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시기를 바랍니다.)
- 청약일정 및 장소

구 분	청약신청	당첨자발표	계약체결
일 시	2021년 11월 15일(월) ~ 11월 16일(화)	2021년 11월 17일(수) 16:00시 이후	2021년 11월 19일(금)~11월 20일(토) 10:00~16:00
방 법	인터넷 청약 (09:00 ~ 17:00)	당사 홈페이지 개별 확인	건본주택 방문 계약
장 소	당사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청약 홈페이지 (https://www.prugio.com/hc/2021/singil)	당사 홈페이지	신길AK 푸르지오 건본주택 (서울시 양천구 목동 919-8)

※ 발열이나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나타나는 유증상자는 건본주택 방문이 불가합니다.

- 본 도시형 생활주택은 아파트 청약통장 순위와 무관하므로, 청약통장이 필요하지 않으며 당사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청약을 신청하여 당첨되더라도 당첨자 관리 및 재당첨 제한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I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서울시 영등포구청 건축과 - 36164호(2021.11.04.)]
- 본 건축물은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임 [2021- 건축과 -신축허가- 67]
- 공급위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255-9번지 일원
- 공급 대상 : 지하 5층 ~ 지상 24층 5개동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 296세대 중 일반분양 286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공공임대주택 10세대)
 - 대지면적 : 8,105.3360㎡
 - 건축물 연면적 : 전체 건축물 연면적 70,507.2194㎡ 중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 39,196.9378㎡
 - 본 건축물은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 업무시설(오피스텔), 공공청사, 근린생활시설이 복합 계획됨
 - 주차대수 : 477대 중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 296대
 - 건축물 층별 용도

구 분	용 도
지하 5층 ~ 지하 1층	주차장, 부대시설, 근린생활시설
지상1층 ~ 지상 3층(지상4층)	근린생활시설, 부대시설, 주민편의시설, 공공청사
지상 4층(지상5층) ~ 지상 24층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 업무시설(오피스텔)

※ 팔호안의 층수는 101~103동에 해당

※ 부대시설 : 기계실, 전기실, 관리사무소, MDF실, 방재실, 주민회의실, 피트니스클럽 등

- 내진설계 등급 : 건축물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한 표기 MMI 등급 진도 VII(0.204g)
- 입주예정일 : 2024년 07월 예정((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일정은 추후통보)

■ 공급대상 및 공급규모

(단위:㎡,세대)

구분	타 입	공급세대	세대 별 계약면적(㎡)				대지지분	
			세대 별 공급면적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 포함)		계약 면적
			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소 계			
도시형 생활주택	49A	80	49.4552	25.6470	75.1022	56.9887	132.0910	15.1983
	49B1	148	49.4666	25.4777	74.9443	57.0019	131.9461	15.2018
	49B2	19	49.6104	25.6359	75.2463	57.1676	132.4139	15.2460
	49C	39	49.9038	27.3819	77.2857	57.5055	134.7912	15.3362

※ 임대세대 10세대(49A타입 - 3세대, 49B1타입 - 3세대, 49B2타입 - 1세대, 49C타입 - 3세대)는 별도

※ 세대별 면적은 소숫점 다섯째자리에서 단수조정하여 넷째자리로 표기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세대별 공급면적과 기타 공용면적의 합산 면적이 계약면적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원)

타 입	군	공급 세대	층	공급금액			계약금 (10%)		중도금 (50%)					잔금 (40%)		
				대지비	건축비	계	1차	2차	1회(10%)	2회(10%)	3회(10%)	4회(10%)	5회(10%)	입주시		
							계약 시	계약 후 1개월 이내	22.05.20	22.10.20	23.04.20	23.08.21	24.02.20			
49A	1군	11	4~6층	398,509,600	445,790,400	844,300,000	10,000,000	74,430,000	84,430,000	84,430,000	84,430,000	84,430,000	84,430,000	84,430,000	337,720,000	
		16	7~10층	401,294,400	448,905,600	850,200,000	10,000,000	75,020,000	85,020,000	85,020,000	85,020,000	85,020,000	85,020,000	85,020,000	85,020,000	340,080,000
		20	11~15층	403,324,000	451,176,000	854,500,000	10,000,000	75,450,000	85,450,000	85,450,000	85,450,000	85,450,000	85,450,000	85,450,000	85,450,000	341,800,000
		18	16~20층	404,079,200	452,020,800	856,100,000	10,000,000	75,610,000	85,610,000	85,610,000	85,610,000	85,610,000	85,610,000	85,610,000	85,610,000	342,440,000
		15	21~24층	405,306,400	453,393,600	858,700,000	10,000,000	75,870,000	85,870,000	85,870,000	85,870,000	85,870,000	85,870,000	85,870,000	85,870,000	343,480,000
49B1	2군	18	4~6층	418,192,000	467,808,000	886,000,000	10,000,000	78,600,000	88,600,000	88,600,000	88,600,000	88,600,000	88,600,000	88,600,000	354,400,000	
		30	7~10층	421,118,400	471,081,600	892,200,000	10,000,000	79,220,000	89,220,000	89,220,000	89,220,000	89,220,000	89,220,000	89,220,000	89,220,000	356,880,000
		40	11~15층	423,195,200	473,404,800	896,600,000	10,000,000	79,660,000	89,660,000	89,660,000	89,660,000	89,660,000	89,660,000	89,660,000	89,660,000	358,640,000
		36	16~20층	424,044,800	474,355,200	898,400,000	10,000,000	79,840,000	89,840,000	89,840,000	89,840,000	89,840,000	89,840,000	89,840,000	89,840,000	359,360,000
		24	21~24층	424,469,600	474,830,400	899,300,000	10,000,000	79,930,000	89,930,000	89,930,000	89,930,000	89,930,000	89,930,000	89,930,000	89,930,000	359,720,000
49B2	3군	2	5~6층	418,569,600	468,230,400	886,800,000	10,000,000	78,680,000	88,680,000	88,680,000	88,680,000	88,680,000	88,680,000	88,680,000	354,720,000	
		4	7~10층	421,496,000	471,504,000	893,000,000	10,000,000	79,300,000	89,300,000	89,300,000	89,300,000	89,300,000	89,300,000	89,300,000	89,300,000	357,200,000
		4	11~15층	423,572,800	473,827,200	897,400,000	10,000,000	79,740,000	89,740,000	89,740,000	89,740,000	89,740,000	89,740,000	89,740,000	89,740,000	358,960,000
		5	16~20층	424,422,400	474,777,600	899,200,000	10,000,000	79,920,000	89,920,000	89,920,000	89,920,000	89,920,000	89,920,000	89,920,000	89,920,000	359,680,000
		4	21~24층	424,611,200	474,988,800	899,600,000	10,000,000	79,960,000	89,960,000	89,960,000	89,960,000	89,960,000	89,960,000	89,960,000	89,960,000	359,840,000
49C	4군	4	5~6층	419,324,800	469,075,200	888,400,000	10,000,000	78,840,000	88,840,000	88,840,000	88,840,000	88,840,000	88,840,000	88,840,000	355,360,000	
		12	7~10층	422,298,400	472,401,600	894,700,000	10,000,000	79,470,000	89,470,000	89,470,000	89,470,000	89,470,000	89,470,000	89,470,000	357,880,000	
		14	11~15층	424,375,200	474,724,800	899,100,000	10,000,000	79,910,000	89,910,000	89,910,000	89,910,000	89,910,000	89,910,000	89,910,000	359,640,000	
		9	16~18층	424,658,400	475,041,600	899,700,000	10,000,000	79,970,000	89,970,000	89,970,000	89,970,000	89,970,000	89,970,000	89,970,000	359,880,000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의거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분하였으며, 동 규정에 의거 중도금 납부 일자는 건축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 본 주택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전세대 확장형으로 일괄 시공되며(공급금액에 발코니확장비용 포함), 비확장형으로 선택할 수 없으므로 청약 또는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통사항

- 2009.04.0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주거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신청 바랍니다.
- 견본주택은 49A, 49B1 타입이 건립되어 있으며, 미건립 타입(49B2,49C)은 분양안내문, 카탈로그 등의 CG 및 건축허가도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종당첨 및 부적격 당첨자의 경우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환불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주택으로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이전등기비용, 취득세, 추가선택품목이 미포함 되어있습니다.(추후 취득세 산정 시 유상옵션 품목이 합산되어 산정될 수 있습니다.)
- 본 주택은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입니다
- 상기 공급금액은 각 세대의 주택형별, 층별, 향별, 일조, 조망 등의 다양한 조건을 고려하여 사업주체가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동일 타입의 공급금액 상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숫점 다섯째자리에서 단수조정하여 넷째자리로 표기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건축허가승인의 합산면적과 분양면적의 합산이 일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주민공동시설, 관리실, 지하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등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고, 기타 공용면적 등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으며, 단 위치 지정이나 구 획 구분 및 구분 등기 등은 하지 않습니다.
- 전용면적은 건축법에 따라 안목치수를 기준으로 산정되어 있으며, 대지지분은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의거 균등 배분하였으며, 세대별 전용면적, 공용면적 및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와 실측정리 또는 소수점 이하 단수 정리 등에 따라 계약면적과 등기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증감이 있을 경우에 계약서와 등기부등본상의 면적 차이에 대하여 분양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소유권이전 등기 시까지 상호 정산하기로 합니다.(단, 소수점 이하 단수 정리로 인한 소수점 이하 면적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정산하지 않습니다.)
- 주변단지의 신축 및 본 사업지 주변 여건에 따라 항공기, 지하철, 도로 교통 및 기타 건축물의 공사 등으로 인한 진동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추후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청구대상이 되지 않으니, 사전에 사업부지 현장을 필히 방문하시어 현장여건 및 주변환경, 주변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 진동, 전자파, 전자기장해, 분진발생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라며, 미확인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사업장 인근의 개발계획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 그리고 정부정책 및 해당 사업주체의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동주택은 정부에서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을 받은 도시형생활주택으로서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공급금액 납부일정을 사전에 숙지하고 청약 및 계약을 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은 당해 건축물의 건축공정이 건축공사비(대지매입비를 제외한다)의 50%이상 투입이 확인된 시기를 기준으로 그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납부 할 수 있으며, 최초로 납부하는 중도금은 계약일로 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납부 할 수 있습니다.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이고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외관 색채 및 패턴, 부대시설 등의 기타시설은 경관심의 재심의 등을 통해 색상 및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2020.10.27.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거래신고 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이하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특히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증빙자료 제출 의무입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거 투기과열지구 내 모든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 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주택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 및 자금조달계획서 기재내용에 대한 객관적 진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업무시설(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은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중도금은 시행사와 대출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의 대출을 통해 납입할 수 있습니다. 단, 법률의 변경,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및 금융시장의 변화,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개인신용등급, 다세대 계약 등)로 인하여 대출조건과 취급 등이 불가(제한) 할 수 있음을 인지하여야 하며 이러한 제한 등으로 대출이 불가할 경우 계약자는 본인의 책임으로 상기 납부 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과 법인은 중도금 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중도금 및 잔금 납입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공공임대주택(10세대)는 101동 601호, 101동 603호, 101동 1102호, 102동 702호, 104동 1305호, 104동 1602호, 104동 1902호, 104동 2302호, 105동 502호, 105동 803호입니다.

II 청약신청 자격 및 공급 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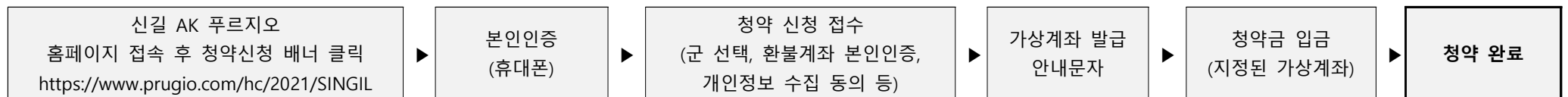
■ 청약자격 및 유의사항

- 입주자모집공고일(2021.11.05) 현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 이상인 분(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 및 외국인 포함) 또는 법인에 한합니다.
- 거주지역 및 청약통장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 1인당 신청가능 건수 : 1인당 "군"별 1건씩, 총4건까지 청약신청 가능함(동일인이 동일군에 2개 이상 또는 총 4건이상 신청하는 경우 본인의 청약신청과 당첨 전부를 무효 처리함)
- 청약신청은 "신길 AK 푸르지오"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약으로 진행되며, 법인은 견본주택에서만 청약 접수 가능합니다.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해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 계약체결이 불가하고 계약체결 이후에는 계약이 취소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당첨자 및 호수는 온라인 전산프로그램 추첨에 의해 신청 군 별 층·호수 무작위 추첨하여 결정됩니다.
- 예비당첨자는 별도 선정하지 않으며, 정당 당첨자 계약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사업주체에서 선착순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 청약일정 및 당첨자 발표

구 분	청약 신청	추첨 및 당첨자발표	계약체결	당첨자 선정 및 동·호수 결정방법
일정	2021.11.15.(월) ~ 2021.11.16.(화) (09:00 ~ 17:00)	2021.11.17.(수) (16:00 이후)	2021.11.19.(금) ~ 2021.11.20.(토) (10:00~16:00)	온라인 추첨 시스템을 통하여 당첨자 호수 결정 ※ 당첨자 확인은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착오방지를 위해 전화로는 확인불가하며, 개별통보는 하지 않음
장 소	인터넷 청약	홈페이지 내 게시	신길 AK 푸르지오 견본주택	
	신길 AK 푸르지오 홈페이지 (https://www.prugio.com/hc/2021/singil)		서울시 양천구 목동 919-8	

■ 청약신청 방식



- 청약접수 마감시간은 2021년 11월 16일(화) 17:00이며, 마감 후 청약신청은 불가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인증절차를 위하여 본인 명의의 휴대폰을 소지하여야 인터넷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 마감시간까지 청약신청을 완료(입금기준)하여야 하므로 마감시간 전 미리 인터넷에 접속하여 여유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청약사이트의 서버다운 등으로 인해 상기일정은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환불계좌 사용가능은행 : 산업,기업,국민,농협,우리,SC,한국씨티,대구,부산,광주,제주,전북,경남,BOA,하나,신한,카카오,수협,새마을금고,신협,우체국,케이뱅크,SBI저축은행 및 유안타,미래대우,삼성,NH투자,키움,대신,한화투자,신한금융,유진투자,메리츠증권
- ※ 법인은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오니, 청약신청금 입금 및 구비서류 지참 후 견본주택 내방을 통해 청약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방문 전 사전 예약 필수)

■ 청약신청금 납부방법

구 분	청약 신청금	금융기관	납부 계좌번호	예금주
1군	1,000,000원	농협은행	청약신청 시 개별 가상계좌 부여	대한토지신탁(주)
2군	1,000,000원			
3군	1,000,000원			
4군	1,000,000원			

- 청약 신청금은 반드시 지정된 가상계좌(지정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견본주택에서 현금 수납은 불가합니다.
- 청약 신청금의 입금자명과 청약신청자명, 환불계좌 예금주는 동일하여야 합니다.
- 청약 신청금 입금 시 분할 입금은 불가하오니 납부하실 총금액을 입금 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청약 시 선택한 군 개수와 동일하게 입금되어야 함)
 예) 1개군 청약 시 100만원 / 2개군 청약 시 200만원 / 3개군 청약 시 300만원 / 4개군 청약 시 400만원
 예) 입금해야 할 금액이 2개군 선택으로 200만원일 경우: 100만원씩 두 번 분할 입금 불가 총금액 200만원만 입금가능 (입금액 불일치의 경우 입금불가 / 오류 메시지)
- ※ 법인은 방문 예약 시 납부할 계좌번호를 안내받고, 청약 신청금 납부 후 견본주택에 방문(구비서류 지참)하여 청약신청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의 현장청약 접수 건은 청약 신청 마감 후 청약시스템에 등록됩니다.

■ 청약 시 구비서류(법인에 한함)

구 분	구 비 서 류
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신청서(당사 견본주택 비치) • 법인인감 및 법인 인감증명서 1부(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1부 제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 대표이사 본인 신청시 신분증,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인 외국인등록증(직원 및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지참) • 청약신청금 납입영수증 • 청약신청금 환불 받을 통장 사본 1부(청약신청 법인 명의)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1.11.05.)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본인이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이 여러 건인 경우 구비서류는 해당 건수 수량에 맞추어 준비하셔야 합니다.

■ 청약신청 시 유의사항

- 청약신청 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입력)사항으로 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사업주체에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 관련 서류를 청구하여 신청자격 유무를 대조, 확인 후 일치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로 선정된 후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포기로 간주하고 별도의 통보 없이 사업주체가 임의 분양합니다.

■ 청약 신청금 환불방법

환불 개시일	환 불 방 법
당첨자 발표일 이후	청약시 제출한 청약신청자 명의 금융계좌로 환불 예정

- 환불 시 청약 신청금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않으며, 제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청약 시 기재한 환불계좌 오류, 환불 불가계좌 및 기타사항으로 환불이 지연 혹은 불가한 경우 당사는 어떠한 책임지지 않으며, 환불 지연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청약 신청금은 당첨과 무관하게 일괄 환불되며, 계약금으로 대체되지 않습니다.

Ⅲ 계약체결 및 계약금 납부

■ 계약일시 및 장소

- 계약일시 : 2021월 11월 19일(금)~11월 20일(토) 10:00~16:00
- 계약장소 : 신길 AK 푸르지오 견본주택 (서울시 양천구 목동 919-8)
 - ※ 계약 시 필요한 서류 일체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함.
 -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서 미작성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의 통보없이 사업주체가 임의 분양할 수 있음.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1차 계약금	농협은행	301-0294-7751-91	대한토지신탁(주)
2차계약금 / 중도금 / 잔금	농협은행	호실별 가상계좌	대한토지신탁(주)

- 상기 계약금 계좌는 분양대금 관리계좌(모계좌)로, 최초 분양계약 체결 시 납부하는 계약금은 지정된 계약기간에 상기 계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2차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까지의 분양대금은 계약자별로 개별적으로 부여되는 가상계좌로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개별 가상계좌에 입금한 금액은 은행 전산망에 의하여 상기 모계좌(농협은행 301-0294-7751-91)로 이체되어 관리됩니다.
- 지정된 1차·2차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에 상기 해당 금융기관의 분양(공급)공급금액 납부계좌로 입금해야 하며 납부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입금 시 계약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여야 함. ex) 101동 202호를 계약한 홍길동 → 101202홍길동

- 2차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납입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영업일 기준으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분양대금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되지 아니하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당첨된 호수를 필히 확인 후 입금하시기 바라며, 계좌오류 등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금증은 영수증으로 간주되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공급금액은 공급계약서에 명시된 계좌 이외의 계좌로 납부 시 분양대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계약시 구비서류

구분	구비 사항
본인 계약시 (공통)	① 계약금 무통장 입금증 ② 계약자 인감도장 또는 서명(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③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1통,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 ④ 계약자 인감증명서 1통 (용도 :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 계약용)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⑤ 주민등록표등본 1통
법인	① 계약금 무통장 입금증 ② 법인 인감 및 법인 인감증명서 1통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1통 제출)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④ 법인 등기부등본 1통 ⑤ 법인 대표이사 본인 계약 시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국내거소 사실증명서 1통),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 (또는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서 1통) ※ 직원 및 대리인 계약시 위임장, 대리인 도장 및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지참 ※ 외국 법인일 경우 : 관련 법률상 토지취득허가서
제3자 대리인 계약 시 추가 사항	※ 본인 이외에는 모두 제3자 대리신청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본인 계약시 외에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① 계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 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②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 계약 위임용], 단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증증서 ③ 계약자의 인감도장 날인된 위임장 1통(당사 견본주택 비치) ④ 대리신청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및 도장

※ 상기 제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1.11.05.)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은 공급 신청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 조건 및 유의사항

- 당첨자로 선정된 후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 포기로 간주하고 별도의 통보 없이 회사에서 임의 분양합니다.
- 당첨 및 계약 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주민등록증 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절취, 청약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으로 당첨 및 계약 체결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청약자에게 귀속됩니다.
- 계약 체결 후 부득이 해약하는 경우 공급계약서 계약조항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합니다.
- 사업부지 인근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 인근 시설물의 변경과 근린생활시설 배치구조 및 층, 세대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등으로 인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체결을 하며, 이로 인하여 사업주체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첨자가 계약 체결시 사업부지, 평면도, 배치도, 건본주택 내 설치된 모형 등을 통해 현황을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 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사기간 내 본 건축물의 구조개선 등을 위하여 임의의 설계변경이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설계변경에 관해서는 사업주체에게 위임합니다.
- 계약자는 계약체결과 동시에 계약조건을 충분히 숙지한 후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공동주택 입주시기와 타 시설(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의 입주시기는 다를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소변경이 있는 경우 즉시 변경내용을 당사에 서면(주민등록등본 포함) 통보하여야 합니다.
- 계약금 또는 일부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건축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별도 제정하는 관리규약의 기준을 따릅니다.
-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사업주체, 중도금 대출기관,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 일정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행정구역 및 단지 내 시설명칭, 동·호수는 관계기관의 심의결과에 따라 공급 시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여야 합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분양자(매도인)는 이 계약체결과 동시에 수분양자(매수인)에 대한 분양대금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양도하고 수분양자는 이의 없이 승낙하기로 합니다.
- 2020.10.27. 개정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거래신고 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이하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 제출 의무화로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인 서울시 영등포구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규정에 의거 투기과열지구 내 모든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 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주택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 및 자금조달계획서 기재내용에 대한 객관적 진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을 의무화 하고 있으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항에 따라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인지세법 제3조 1항 1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공급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계약(전매)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 대상이므로 공급계약(전매포함) 체결 시 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재금액은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 3조와 같은 법 시행령 3조에 따른 부동산 거래 계약서에 기재된 실거래가격(공급금액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으로 등기원인의 서류로 등기소에 제출하기로 한 계약서에는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함. 부동산등기(최초 공급계약서와 최종매수자의 인지세 납부의무이행 확인)와는 무관하게 중간 전매도 인지세 법에 따른 납부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 안내

- 본사업은 중도금 대출 이자 후불제 사업이며, 대출은 총 분양대금의 40% 범위 내에서 가능함.
- 중도금 대출 이자 납부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 발생한 대출 이자에 대해서는 사업주체가 대납하고 입주지정기간 개시일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계약자가 납부해야 함. 단, 사업주체가 대납한 이자는 계약자가 사업주체에게 잔금납부시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주지정기간이 변경되는 경우 중도금 대출 이자 납부는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 발생한 이자는 사업주체가 납부하고,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개시일부터 발

생하는 이자는 계약자가 납부해야 합니다.

단, 사업주체가 대납한 이자는 계약자가 사업주체에게 잔금납부시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 이자 납부의 경우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가 부도 또는 파산시 사업주체가 납부하던 중도금 대출이자를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은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가 선정합니다.
- 중도금 대출 기간은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에서 정한 날짜까지입니다.
- 중도금 대출 신청은 계약금 완납 이후 가능하며, 계약금 미납시 대출 신청이 불가합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이 제반사정(관련 법률 또는 정부 정책의 변경, 금융시장 변화 등)에 따라 불가 또는 한도가 축소되는 경우 계약자는 본인 책임 하에 분양대금을 납부해야 하며 대출불가 또는 대출한도 축소를 사유로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이 개인사정(신용불량거래자,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대출보증서 발급불가 등)에 따라 불가하거나 한도가 축소되는 경우 계약자는 본인 책임하에 분양대금을 납부해야 하며 대출불가 또는 대출한도 부족을 사유로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 실행 후 계약자의 개인사정(신용불량거래자 등)으로 인해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지 등에 따라 분양대금이 완납 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은 제1금융권 기관으로 선정이 불가할 경우 제2금융권 기관으로 선정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 한도는 계약자 사정, 관련 정책 및 대출상품 종류 등에 따라 계약자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니 계약자는 사전에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에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 선정 일정은 정부 정책 또는 금융기관 사정에 따라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도금 납부 일정이 변경될 수 있고 계약자는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분양사무소 및 견본주택은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시 대출 가능 여부를 결정할 수 없으며, 추후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의 개별 심사를 통해 대출 여부가 결정되므로 계약자는 본인의 대출불가 또는 대출축소 사항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다주택자, 법인, 외국인의 경우 중도금 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공급 계약서에 따릅니다.
- 중도금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입니다.

■ 전매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

- 본 공동주택은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분양하는 도시형생활주택으로 "주택법" 제64조에 의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10년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의 기간(이 경우 그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 전매행위 제한기간은 5년)]까지 분양 받는 자의 지위 또는 건축물의 전매를(매매,증여, 그 밖에 권리가 변동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은 제외)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될 수 있고, "주택법" 제101조에 의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 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분양권 전매는 전매 당시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대통령령으로 인정하는 예외사항의 경우)에서 가능하며, 계약금 완납 이후 "갑"이 요구하는 제반서류를 제출하고 사전승인을 득해야 하며, 승계에 따 른 모든 책임은 양도인, 양수인이 부담한다.
- 계약자는 분양권 전매 시(대통령령으로 인정하는 예외사항의 경우) "을"은 "갑"과 해당지자체의 승인을 득한 후 전매동의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해당 지자체의 검인

후 최종적으로 "갑"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상기 내용에 의거 분양권전매 승인신청시 "갑"에 대한 본 계약서상에서 정한 공급대금 및 연체료 등의 채무를 이행한 경우에 한하며, 또한 금융기관으로부터 위표시재산을 대상으로 대출을 받은 자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전매 당사자 간의 대출승계 증거서류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여야 한다. 또한, 분양권 전매시 양수인"을"이 "갑"과 본 계약 및 분양 계약과정에서 체결한 약정(추가선택품목)에 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 사업주체는 계약자의 전매 요청 시 명의도용 전매 등 부동산시장 질서 및 공급질서를 해하는 행위 방지 및 채무자의 채무이행능력의 검증을 위하여 계약자 또는 전매매수인에게 전매매수인의 분양대금 지급의지 및 능력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사업주체의 판단결과 분양대금 회수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전매에 부동의 할 수 있다.
- 전매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 세무, 기타 제반 법적 문제에 대해서는 계약자가 책임지며, 기타 분양권 전매에 관한 사항은 관련법에 의거한다.

■ 입주자 사전방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 제3항 제27호 규정에 따라 도장공사 · 도배공사 · 가구공사 · 타일공사 · 주방용구공사 ·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주지정 개시일 전 입주개시 약 1~2개월 전에 입주자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함

■ 준공예정일 및 입주예정일 : 2024년 07월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 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 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 시 단지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선수금이 부과됩니다.
- 입주지정 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 등이 부과됩니다.

IV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안내

■ 가전옵션

1)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제조사 : 삼성전자)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구 분	선택안	설치개소	설 치 장 소	금액	비고
49A	선택1	실내기2대	거실, 침실	2,800,000	평면옵션 '스튜디오형' 적용 시, 선택 가능
	선택2	실내기3대	거실, 침실(2대)	4,100,000	
49B1	선택1	실내기2대	거실, 침실	2,800,000	
	선택2	실내기3대	거실(2대), 침실	4,100,000	
49B2	선택1	실내기2대	거실, 침실	2,800,000	
	선택2	실내기3대	거실(2대), 침실	4,100,000	
49C	선택1	실내기2대	거실, 침실	2,800,000	
	선택2	실내기3대	거실(2대), 침실	4,100,000	

- 시스템에어컨 선택 옵션에 따라서 시스템 에어컨 수량 및 냉방 용량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상기 금액은 이에 따른 비용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 시스템에어컨 신청세대는 기본제공 2개소(거실, 침실)인 매립형 냉매배관 및 에어컨 실내기용 전기콘센트 설치공사를 제외하며, 시스템에어컨 판매가는 해당실의 냉매배관 및 전기콘센트 설치공사비를 감액하여 산정한 금액입니다.
-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추가로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에어컨 배관으로 인한 환기 디퓨저 위치, 스프링클러 위치, 천장 배관 위치,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장 높이 등이 이동(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은 냉방전용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은 제조사의 도산 혹은 설계상의 이유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 동급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실내기는 설치 위치의 변경 또는 일부 제외 및 추가가 불가합니다.
- 시스템에어컨은 옵션선택에 따라 각 세대 내 실외기실에는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해 실외기실 공간이 협소해 질 수 있고 운전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을 옵션품목으로 선택하지 않을 경우 거실, 침실 냉매배관만 시공 됩니다.
-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별도의 무선 리모콘을 제공합니다.

2) 빌트인 가전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품 목	제조사	선택 안	모델명	금액	비 고
빌트인 김치냉장고	LG전자	-	K221PR14BL1/R1	1,200,000	
전기오븐	삼성전자	-	NQ50H5533KS / 고급형	300,000	
전기쿡탑	쿠쿠전자	선택1	CIHR-D303FB 인덕션2구, 하이라이트1구	550,000	택1
		선택2	CIRS-CL301FB / 인덕션3구	650,000	
에어브러시	그렉스	-	DSC-300	220,000	
의류건조기	삼성전자	-	DV90T5440KW	1,050,000	

- 주방가전제품은 주방 구조에 따라 설치 위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빌트인 김치냉장고 미 선택 시 해당 위치에 키큰장 등 수납장이 설치되며,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평면옵션 및 특화품목 등

- 평면선택 및 추가선택품목 (바닥 마감재, 주방상판 및 벽 마감재, 평면옵션 및 수납특화옵션,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빌트인 가전 등)은 시공사인 (주)대우건설과 고객 간 계약 및 설치가 진행되며, 세부사항(계약일정, 납부일정, 납부계좌 등)은 견본주택에서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 추가선택품목은 자재의 품질, 품귀, 생산중단, 단종, 제조회사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와 사업자의 시공여건 또는 신제품의 개발에 따라 동일회사의 동종,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바닥재옵션(유상)

구분	타입	품목	기본형(무상) - 1안	선택형(유상) - 2안	금액	비고
바닥재 옵션	49A	바닥마감재	전 실 강마루	강마루(침실) + 바닥타일(거실)	602,000	
	49B1		전 실 강마루	강마루(침실) + 바닥타일(거실)	859,000	
	49B2		전 실 강마루	강마루(침실) + 바닥타일(거실)	807,000	
	49C		전 실 강마루	강마루(침실) + 바닥타일(거실)	784,000	

※ 거실 바닥 마감재 2안 선택 시 타입별로 평면옵션에 따라 시공 부위가 상이하며, 자세한 내용은 카달로그 등 안내자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조명특화 옵션(유상)

구분	타입	품목	기본형(무상) - 1안	선택형(유상) - 2안	금액	비고
조명특화 옵션	49A	조명특화	기본 조명	특화 조명	1,680,000	
	49B1		기본 조명	특화 조명	1,680,000	
	49B2		기본 조명	특화 조명	1,680,000	
	49C		기본 조명	특화 조명	1,680,000	

3) 거실,주방 마감재(유상)

구분	타입	품목	기본형(무상) - 1안	선택형(유상) - 2안	금액	비고	
거실 주방 마감재	49A	주방 / 주방상판 / 거실 뒷벽	주방벽 : 타일 (300*600) 주방상판 : 인조대리석(MMA) (거실 뒷벽 : 벽지)	주방벽 / 주방상판 : 엔지니어드 스톤 (거실 뒷벽 : 벽지)	택1	2,679,000	
				주방벽 / 주방상판 / 거실뒷벽 : 세라믹 타일		5,062,000	
	49B1			주방벽 / 주방상판 : 엔지니어드 스톤 (거실 뒷벽 : 벽지)	택1	2,006,000	
				주방벽 / 주방상판 / 거실뒷벽 : 세라믹 타일		4,246,000	
	49B2			주방벽 / 주방상판 : 엔지니어드 스톤 (거실 뒷벽 : 벽지)	택1	2,600,000	
				주방벽 / 주방상판 / 거실뒷벽 : 세라믹 타일		5,071,000	
	49C			주방벽 / 주방상판 : 엔지니어드 스톤 (거실 뒷벽 : 벽지)	택1	2,600,000	
				주방벽 / 주방상판 / 거실뒷벽 : 세라믹 타일		4,968,000	

※ 엔지니어드스톤 및 세라믹 타일은 재료의 물성에 따라 이음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방상판 및 벽 마감재는 기본형(1안) 및 엔지니어드 스톤 선택 시 각 세대에 비치된 샘플로 시공되며,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방상판 및 벽 마감재는 타입별로 평면옵션에 따라 시공 부위가 상이하하며, 자세한 내용은 카달로그 등 안내자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평면옵션(유상)

구분	타입	품목	기본형(무상) - 1안	선택형(유상) - 2안	금액	비고
평면옵션	49A	스튜디오 타입	미설치	작은 침실 슬라이딩도어	1,616,000	스튜디오 타입과 침실 유리슬라이딩도어는 동시선택 불가
	49A	드레스룸 특화	미설치	불박이장	3,061,000	

5) 침실도어(유상)

구분	타입	품목	기본형(무상) - 1안	선택형(유상) - 2안	금액	비고
침실도어	49A	침실도어	목창호 도어	유리 슬라이딩 도어	1,656,000	스튜디오 타입과 침실 유리슬라이딩도어는 동시선택 불가
	49B1				1,725,000	
	49B2				1,666,000	
	49C				1,711,000	

6) 수납특화옵션(유상)

구분	타입	품목	기본형(무상) - 1안	선택형(유상) - 2안	금액	비고
수납특화 옵션	49B1	드레스룸 특화	미설치	드레스룸 불박이장 추가	3,107,000	
	49B2				3,246,000	
	49C				2,957,000	

※ 수납특화옵션 기본형(1안) 선택 시 드레스룸 내부 벽은 도배지로 마감 됩니다.

7) 주방 키큰장 옵션

구분	타입	품목	기본형(무상) - 1안	선택형(유상) - 2안	금액	비고
주방 키큰장 옵션	49A	주방 키큰장 옵션	수납장	빌트인 김치냉장고	1,200,000	
	49B1		수납장	빌트인 김치냉장고	1,200,000	
	49B2		수납장	빌트인 김치냉장고	1,200,000	
	49C		수납장	빌트인 김치냉장고	1,200,000	

8) 플러스 옵션 선택품목 유의사항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제4조,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제4조와 제4조의2에 의거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품목으로서 사업주체가 제시하여 추가로 품목을 선택하고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의 설치여부에 대하여 입주자 모집공고 시 입주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입주자와 주택공급계약 체결 시 추가 선택품목의 구입의사가 있는 입주자와 추가 선택품목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상기 별도 계약품목은 일정 시점 이후 시공을 위해 자재를 발주해야 하므로 계약 후 선택사항 변경 및 해제가 불가합니다.(추가 선택품목 계약체결 최종 일정은 별도 통보 예정입니다.)
- 별도 계약품목의 설치 위치는 지정되어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를 지정 할 수 없습니다. (옵션 계약 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유상 옵션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나 별도의 취득세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유상 옵션공사비(부가세포함)는 옵션 설치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상기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으로 변경 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 형별 설치 위치 등 세부 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기오븐 옵션 미 선택 시 기본형 전기오븐(HSB-N361B / 삼성전자)이 시공 됩니다.
- 전기쿡탑 옵션 미 선택 시 기본 하이라이트 3구 전기쿡탑(ERA-BT300 / SK매직)이 시공 됩니다.
- 빌트인김치냉장고 옵션 미선택 시 수납장이 설치됩니다.
- 김치냉장고 옵션 선택 시 도어 열림 방향은 평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에어브러시는 본체에 설치된 종이주머니에 흡입물이 쌓이는 방식으로 주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관리 주기에 따라 성능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상기 빌트인 가전 품목들은 제품 특성상 유지관리 비용이 발생하며 사용 시 소음, 진동 등으로 인한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가전류의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은 동일한 제품일지라도 등급산정 기준 및 시점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플러스옵션 선택에 따라 조명기구, 배선기구(스위치, 콘센트류), 전자식스위치, 전기/통신단자함 등의 설치위치, 설치수량, 제품사양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 미설치될 수 있습니다.
- 플러스옵션 선택에 따라 전기분전반 내 전기차단기 설치가 상이할 수 있으며, 해당 옵션을 선택하지 않을 시 해당 기능을 위한 전기차단기는 미설치됩니다.
- 별도 계약품목의 위치 및 선택 항목은 당사 분양 홈페이지 또는 견본주택에 전시되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가전옵션, 평면옵션 및 특화품목 납부계좌

구분	납입금액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비고
계약금	추가 선택품목 합계액의 10%	추후공지	추후공지	(주) 대우건설	※ 무통장 입금시 의뢰인 란에 반드시 동·호수 및 계약자의 성명을 기재요망 (예시 : 101동 1001호 홍길동의 경우 →) 1011001홍길동
잔금	추가 선택품목 합계액의 90%	추후공지	추후공지	(주) 대우건설	

- ※ 추가 선택품목 계약 진행과 관련 하여서는 견본주택에서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 ※ 추가 선택품목(가전옵션, 평면옵션 및 특화품목 등) 계약금은 지정된 상기 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잔금은 계약 체결 시 세대별로 부여되는 가상계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타 은행 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 가능)
- ※ 무통장 입금 시, 동·호수 7자리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여야 합니다.(예시: 101동 1403호 홍길동: 1011403홍길동 / 102동 201호 홍길순: 1020201홍길순)
- ※ 상기 계약금 계좌는 추가 선택품목대금 관리계좌(모계좌)로, 상기계좌로 지정된 계약기간에 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 잔금은 공급계약 체결 시 세대별로 부여되는 가상계좌로 지정된 납부일까지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개별 가상계좌에 입금한 금액은 은행 전산망에 의하여 상기 계약금의 모계좌로 이체되어 관리합니다
- 세대별 추가선택품목(가전옵션, 평면옵션 및 특화품목 등) 의 잔금 납부계좌(가상계좌)는 계약체결 시 세대별 공급계약서에 명기하여 고지할 예정입니다.

- ※ 지정된 추가 선택품목(가전옵션, 평면옵션 및 특화품목 등) 의은 납부 지정일자에 입금 바라며, 사업주체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 상기 선택품목(가전옵션 및 평면옵션)의 대금 납부계좌 및 세대별 가상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선택품목(가전옵션 및 평면옵션)의 대금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당사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 추가 선택품목(가전옵션, 평면옵션 및 특화품목 등) 의 계약금 계좌와 분양대금 계좌는 상이하므로 입금 시 유의바랍니다.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추가 선택품목(가전옵션, 평면옵션 및 특화품목 등) 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아파트 분양대금 입금계좌와 혼동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품목(가전옵션, 평면옵션 및 특화품목 등) 의 대금(계약금)은 계약 당일 상기의 납부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무통장 입금증 또는 인터넷뱅킹 확인서 등은 계약체결 시 지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가전옵션, 평면옵션 및 특화품목 등) 공사의 계약내용 및 계약금, 잔금 납부일정과 납부금액은 사업주체가 적의 조정한 별매품(옵션) 공급계약서에 준합니다.
 - 추가 선택품목(가전옵션, 평면옵션 및 특화품목 등)의 공급금액에는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입주 시 개별 납부)
 - 추가 선택품목(가전옵션, 평면옵션 및 특화품목 등)의 비용은 주택형별로 산출된 가격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을 방문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상기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등 수준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추가 선택품목의 계약이 불가합니다.
- ※ 추가 선택품목은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지정을 할 수 없으며, 계약 전 위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상기 추가선택품목은 수급 여건에 따라 시공시 동일사양으로 대체시공될 수 있습니다.
- ※ 타입별 계약금이 상이한 유상옵션 품목이 있어, 계약 전 반드시 계약금 및 계약조건, 납부일정 등을 꼭 확인하시기 바람.(계약 체결 최종 일정은 별도 통보 예정임)
- ※ 계약금 납부 이후 중도금 및 잔금 납부 시 공급 호수별로 가상계좌 형태로 부여될 예정이므로, 호수별로 계좌가 달라 입금 시 주의가 필요하오니 반드시 공급계약서를 확인 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 선택품목은 입주자 모집공고 시 공개된 금액의 총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선택품목은 입주자와 주택공급계약 체결 시 선택품목의 구입의사가 있는 입주자와 선택품목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선택품목 계약은 공동주택 공급계약과 별개임)
- 선택품목에 대하여는 비교, 확인할 수 있도록 당사 견본주택에 전시되오니(사진 등을 전시할 예정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옵션 선택에 따라 일부 배선기구 수량, 종류, 위치가 상이할 수 있음).
- 본 공고 외 선택품목 설치에 관한 내용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및 시행지침” 에 따릅니다.
- 자재발주 등 시공상의 문제로 실질적 시공착수시점 이후에는 선택품목의 계약이 불가합니다. (단, 계약 체결 일정은 추후 통보함).
- 선택품목에 따라 일부 배선기구 및 조명기구의 사양, 수량, 중,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질의 타사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설치위치 등 세부 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선택품목은 분양 당시 기준 본 도시형생활주택 컨셉에 맞추어 디자인하고 품질 관리하는 품목으로써 계약자의 실질적 시공착수시점(1차 중도금 납부일) 이후 해제 불가능 물론 판매가 또는 사양(모델)에 대하여 할인 또는 교체 등을 요구할 수 없는바 계약 전 타사 및 기타 시중품목과 충분히 비교검토한 후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옵션 계약은 도시형생활주택 공급계약과는 별도 계약사항이나 도시형생활주택 공급계약이 해제 또는 취소되는 경우에는 상기 옵션 계약도 부수하여 해제 또는 취소됩니다.
- 상기 선택품목 금액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제4조,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제4조에 의거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품목으로서 사업주체가 제시하여 추가로 품목을 선택하고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V

기타 주요 사항

■ 기타유의사항

- 단지 내부여건을 필히 확인하신 후 청약/계약에 임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공동주택은 교육청이나 인허가청 요청시 분양계약 관련사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전용면적은 안목치수로 산정하며,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登記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택규모의 표시는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하였으며,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과는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세대 당 공급면적,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절차 (준공 시 확정측량)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부대복리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면적 조정 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대지경계 및 면적은 택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등으로 최종 측량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준공 시 대지경계 및 지적 확정에 따른 대지면적 정산 처리 시 입주자는 동의하여야 합니다.
- 본 공동주택은 단지배치 특성상 향별, 층별, 위치별 차이 및 세대 상호간의 향·층에 따라 일조권, 일조량, 조망권, 환경권에 차이가 있으며, 일부 사생활권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내 비치된 설계도서 및 참고도서, 분양홍보물 등을 충분히 확인하고 청약 및 계약 체결하여야 합니다.
- 건축법 및 주택법을 준수하여 시공한 인접 건물에 의하여 배치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등의 사생활권의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주변 시설물의 신축으로 인해 본 단지의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니 사전에 현장을 필히 방문하여 제반여건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쓰레기분리수거장, 자전거보관소, D/A (설비 환기구) 등의 위치, 개소, 형태는 실제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내 배수구 및 환기 디퓨저 등의 설비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청약 및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주위 환경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타사 또는 당사 분양공동주택의 마감사양, 설치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과 본 공동주택을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건축허가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 공동주택과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체결하여야 합니다.
- 본 공동주택의 구조개선 및 입면개선을 위한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
- 건축법, 주택법 등에서 정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사업주체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 공동주택의 현장 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준공 전후 최종 건축허가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 단지모형,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사업주체에게 위탁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공동주택 및 지하주차장의 기초구조는 굴토 후 지내력시험 결과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외 조경 및 세부 식재계획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외부시설물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을 청약 접수 전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동 색채 및 옥외시설물 등 단지조경 및 디자인은 향후 상위 지침변경 및 인허가 과정 중 입주자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인허가 기관 주도의 계획에 의한 주변 개발 계획은 관련 인허가 기관 주관사항으로 당사의 의지와 상관없이 계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 동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르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조경 및 조경수 식재위치는 입체적 단지 조화를 고려하여 설치나 식재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단, 규격이나 수량의 변경이 있을시 당초 계획보다 동등이상으로 시공됨), 관계기관 심의결과, 시공과정 등에 따라 조경 시설물에 따른 조경 선형이나 포장 및 조경 시설물의 재료, 형태, 색채,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모형, 조감도 등에 표현된 단지 외부 횡단보도, 보도, 점자블럭 등의 사항은 본 시공시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구조 및 흠막이 설계는 실시설계시 상세한 검토를 통해 부재규격 변경 및 재료강도 또는 배근이 증감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동의 주출입구는 동 평면의 형상 및 진입 방식에 따라 위치 및 구조형식, 형태, 크기, 마감계획 등이 동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옥상의 구조물 및 옥상 난간계획은 실시공시 모형, 조감도 등에 표현된 이미지와 형태, 규격, 마감, 개소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옥상의 구조물은 실시공 시 구조물 지지를 위한 수직부재 등이 추가로 시공될 수 있으며, 구조물 상부 노출면에는 도장이 시공되지 않습니다.
- 단지 출입구의 문주 및 경비실, 단지 내 D/A, 탐라이트, 외부E/V 및 계단실의 형태, 디자인, 재질 및 마감 등은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필로티가 설치되는 동의 주변 세대는 보행자들로 인해 소음 피해를 받을 수 있으며, 낙하물 방지를 위한 캐노피가 추가 설치될 수 있고 필로티 천정과 출입구 주변의 캐노피의 형태, 재질, 색채 및 수량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주동 저층부의 내외부는 석재 및 석재뿔칠, 스테코 등으로 혼합 마감되며, 주동 저층부와 연계된 동출입구, 특화시설, 부대시설, 상가시설에는 별도의 마감계획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 견본주택에는 일부 설계변경 예정사항이 반영되어 있으며, 관련내용에 대한 설계변경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 견본주택에는 49A, 49B1 형이 설치되어 있으며, 설치되지 않은 타입은 카탈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계약 전에 평면 형태, 가구배치, 수납공간, 실면적, 발코니 형태 및 크기 등 견본주택에 전시된 주택형과 다른 사항(마감자재, 제공품목 및 가구 디자인 등)을 숙지하여 계약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서 제시된 마감자재 및 설치 제품은 자재 품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와 사업자의 시공여건 또는 신제품의 개시 등의 사유로 동등 이상의 다른 제품(타사 제품 포함)으로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전시된 세대의 외부벽체 및 외부 바닥마감, 조경 및 시설물 등은 견본주택 전사용으로 시공되었으며, 본 공사시 외벽은 해당 위치의 외벽마감(수성페인트 등), 바닥은 외부 조경계획에 따라 시공될 예정이나, 일부 마감은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에는 기본품목, 전시품목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고, 본 시공 시에는 전시품목은 설치되지 않으며, 해당 세대의 계약내용에 따라 설치될 예정입니다.
- 견본주택 내부에 연출용 조명을 포함한 연출용 전시품(인테리어 소품가구, 디스플레이 가전제품, 기타 전사용품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분양가에 포함된 품목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외부 창호류, 세대 내 타일류, 목창호류, 가구류, 유리, 바닥재(마루, 타일 등) 외부난간(발코니, 실외기실) 등 마감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되지 않은 평면형태 및 가구형태(일부 유상 또는 무상, 기준층 세대 등)에 대해서는 각종 홍보물 등의 CG등을 통해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향후 견본주택에 설치되어 있는 평면형태와 다르게 시공되는 부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계약자는 계약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 및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되지 않은 가구(색상, 마감, 형태 및 디자인) 및 마감재에 대한 내용은 상담석에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니, 계약자는 계약전 이를 충분히 확인하고 상담 및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 및 단위세대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대지 주변현황, 필요한 전기, 설비기기 및 출입문 등은 표현되지 않았고, 실제 시공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생략 또는 표시(설치)된 우,오수 배관의 위치, 선홍통과 수전의 위치, 조명기기(등기구) 사양 및 위치, 배선기구(스위치 및 콘센트)의 사양, 수량 및 위치, 온도조절기와 바닥배수구의 제품사양 및 위치 등은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마감자재 내용은 주택형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 및 CG, 홈페이지 상의 마감재리스트, 인쇄물을 참고하시기 바람(도면, 마감재리스트 등과 내용이 상이할 경우 견본주택을 우선으로 합니다.)
- 견본주택 및 모형, 각종 홍보물 상의 CG 등은 일부 내용이 건축허가 도서와 차이(도어 및 창호의 위치, 열리는 방향, 도어의 종류(여닫이 또는 미서기 등), 크기 등의 변경을 포함함)가 있을 수 있으니, 이에 대한 사항에 대해 반드시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및 인허가 진행상황에서 일부 내용이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의 전시품(모형 등) 및 연출용 시공부분(외부조경 및 외부마감 포함) 또는 카탈로그, 팸플릿 등 각종 홍보물 및 조감도, 투시도, 사진 등은 소비자의 계약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시설물의 위치, 규모 및 색채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 또는 심의결과에 따라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의 전시품(모형 등)에 제시된 외관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향후 실시설계 시 유효 동선 확보, 설비배관 공간 확보, 개방감 확보 등을 위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에 설치된 단지모형의 조경계획 및 식재, 시설물, D/A, 자전거보관대, 포장, 주변환경, 부지 고저차 등은 실제 시공시 변경 또는 삭제, 추가될 수 있으며, 일부 내용은 모형상에 생략되어 있는 사항도 있을 수 있고, 외부 조경 바닥마감 색상 및 패턴은 본시공시 변경되어 시공될 예정입니다.
- 견본주택의 연출용 시공부분 또는 카탈로그, 기타 홍보물상 조감도 또는 사진은 당사에서 연출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건축허가도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 등에는 소비자의 주택형에 대한 인식의 편의를 위하여 간략한 표기를 한 부분이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의 미건립 평형의 가구, 조명기구, 위생기구(수전, 도기, 악세서리 등)제품 등은 동일 평형대의 건립세대에 설치된 제품을 기준으로 시공되며 일부 타입은 평면 특성상 일부 가구, 조명기구 위생기구(수전, 도기, 악세서리 등)가 변경되어 설치되거나 미설치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감지기, 유도등, 스프링클러, 소화기 등의 위치 및 개수는 본 공사와 무관하며 실시공시 소방법에 맞추어 설치됩니다. (견본주택용 설치된 스프링클러와 감지기는 견본주택용 소방시설입니다)
- 인터넷 홈페이지 상의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은 견본주택 오픈전 견본주택 내부를 촬영한 것으로 일부 내용이 실제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고, 마감재 이외에 디스플레이를 위한 각종 전시상품 및 유상옵션 품목이 포함된 사진 또는 동영상이므로 인터넷 홈페이지 상의 전시품목 안내 및 견본주택을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 후 당사 사정에 따라 폐쇄 또는 철거 예정입니다.
- 견본주택 내 건립세대, 카탈로그 및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전시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으며 단지 모형의 조경, 식재, 주변 환경 및 부지 고저차 등은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세대내에는 보안용 CCTV가 설치될 수 있으며, 본 공사시에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 분양홍보물

- 입주자 모집공고 이전 제작, 배포된 홍보물은 사전 홍보 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견본주택 방문 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홍보과정에서 주변 환경, 개발계획, 교통여건 등의 계획 또는 예정사항은 추후 관련정책 등의 변화로 변경 가능하오니, 관련사항별 관계기관에 반드시 본인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을 해야하며 향후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 추후 민원을 제기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급안내문 및 카탈로그 등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입면계획, 색채 등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및 현장을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 계약체결 시 견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 청약 및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주위환경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종 광고 및 홍보물(건본주택 리플렛, 전단, 공급안내, 홈페이지, 신문광고 등) 등에 표시된 주변 환경, 개발계획, 교통여건 및 각종 시설(도로(차도 및 보도), 공공청사, 학교, 근생시설, 의료시설, 보육시설, 종교시설, 지하철 역사 및 노선, 버스정류장 및 노선, 공원, 녹지 등)의 조성계획(예정사항)은 각 시행주체가 계획, 추진예정중인 사항을 표시한 것으로서 각종 인허가 과정 및 시행주체 또는 국가 정책에 따라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청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전 분양홍보자료 및 각종 홍보물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 향후 변경 또는 취소 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니 반드시 사업부지 및 주변 환경, 개발계획을 확인하시고 계약하기 바라며, 향후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이나 사업주체의 책임이 아닌 주변환경 및 개발계획의 변경 등의 사항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전 분양홍보자료, 홈페이지, 카탈로그 등의 홍보물과 건본주택내 사인물 및 모형 등에 표현된 계획도로, 공원, 녹지, 종교부지, 보육시설부지 등의 도시계획시설 또는 예정시설 등은 향후 정비계획 변경, 각종 심의, 실시계획인가 등의 인허가 결과, 현장 여건, 설계변경 등으로 내용이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으며, 해당 시설의 세부계획(건물의 형태 및 배치, 출입구 및 통행로, 식재 및 시설물의 배치 및 수량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카탈로그 및 홍보물 등에 이용된 사진, 일러스트(그림), 광역위치도(약도 및 지도 포함), 토지이용계획도, 조감도, 단지배치도, 조경 및 부대시설, 각 주택형별 단위세대 평면도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전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상이할 수 있으며, 각종 자료의 평면은 입면재료, 창호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평면이므로 동일한 평면이라도 위치에 따라 입면재료 및 창호가 상이할 수 있으니, 계약 전 필히 해당 세대의 입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면재료에 따라 창호의 크기 및 상세가 상이할 수 있으니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홍보에 사용된 모형(단지모형 등)과 카탈로그 및 각종 인쇄물, 기타홍보물에 삽입된 CG(광역위치도, 조감도, 배치도, 투시도, 조경도, 주민공동시설 및 단위세대 평면도 등)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개략적으로 제작된 것이므로 실제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또한 동선, 기능, 성능개선 및 인허가 과정의 관계기관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식재 및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현장여건, 측량결과 및 각종평가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설계

1. 일반사항

- 본 건축물은 2021년 6월 18일 최초 건축허가를 득한 사업으로 일부 규정은 최초 건축허가 당시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 근린상업지역으로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오피스텔),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이 단지 내에 함께 설치됩니다.
- 공동생활 건축물의 특성상 층간, 세대 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및 공용부의 냉난방, 급수, 급탕, 전력, 조경용수, 동파방지열선, 제습기, 배수펌프, 환기 장치사용으로 공용 전기료, 수도료 등이 관리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내화성능시험이 요구되는 공종의 경우, 성능인증 및 인증표시는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입주 후 임의해제 및 부속물(도어락등)의 임의설치, 교체에 따른 성능시험 결과는 발주처 및 시공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 계약 이후 계약자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은 불가합니다.
- 인허가 조건 변경, 시공성 개선 등을 위한 경미한 설계변경(옥탑, 지붕, 난간, 입면, 단지시설물 등의 위치이동 등등)에 동의하며,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 또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선정한 관리자가 성능시험 등을 통하여 품질 또는 성능 확인 후 현장 시공에 적합하다고 승인하여 설치한 자재 또는 제품에 대하여, 시공사가 설계 도면 및 시방서 등에 따라 시공한 경우 설치(시공) 당시부터 성능미달의 제품을 설치하였다거나 시공 및 설치상의 하자가 있었음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재 상태에서 성능미달 사실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계약자는 시공사에게 품질 또는 성능미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본 공동주택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시설별 대지지분은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연면적 비율로분할하였으며, 추후 시설별 면적 변경이 발생하더라도 대지지분의 시설별 분할면적은 공급당시 기준으로 함.
- 세대별 대지지분은 시설별 대지지분에서 세대별 전용면적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버림하였고, 각각의 버림에 대한 오차는 적정 할애하였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향후 지적확정 측량결과 또는 공부정리결과에 따라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금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본 공동주택은 인근에 일반도로가 접하여 입주후 소음피해가 있을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이와 관련 도로관리기관에 일체의 이의제기를 할 수 없고 소음 피해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설치된 공개공지와 보, 차도는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된 것으로 인근 주민들의 이용으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용의 제한을 할 수 없으며, 대지 내 설치된 도보의 경우 유지관리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공동주택은 단지배치 특성상 동별, 향별, 층별, 위치별 차이 및 세대 상호간의 향·층에 따라 일조권, 일조량, 조망권, 환경권에 차이가 있으며, 일부 사생활권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건본주택 내 비치된 설계 도서 및 참고도서, 분양홍보물 등을 충분히 확인하고 청약 및 계약 체결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시 건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일조권, 조망권, 동간 간섭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의 책임입니다.
- 입주 시 입주자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공용부분(주거공용 제외) 및 복리시설 중 일부를 입주지정기간 시작일로부터 6개월간(필요에 따라 연장 가능) 입주 지원을 위한 업무시설로 사업주체가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용자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공장생산자재(타일 등)의 경우,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해 결정합니다.
- 공사용 도서의 구체화 (세부도서작업) 과정 및 실공사 시 일부 허가도서의 불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수정 및 성능개선과 구조 상세해석에 따른 구조안전성 확보를 위한 구조 부재의 단면 및 주근 규격, 배근간격 등의 변경 등 품질제고를 위하여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변경(입주자에게 별도 안내 및 동의 없이 진행함)에 대하여 시행자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시행자에게 위탁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건폐율, 용적률, 주차대수 및 조경면적은 법적인 규정 내에서 일부 변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대지 주위 도로폭, 단지와의 단차, 단지내 도로선형, 시설물의 위치, 조경(수목, 수경시설, 조경시설, 포장, 완충녹지, 단지 주/부 출입구 도로 확폭구간), 단지 레벨차에 따른 옹벽(건축옹벽, 토목옹벽, 돌쌓기벽 등)의 형태 공법, 위치가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따른 설계 변경이 수반 될 수 있으며, 인허가나 현장 여건에 따라 옹벽 및 석축 등의 위치, 높이, 재질 등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의 명칭, 동표시, 외부 색채와 외관, 옥탑디자인, 외부조명 시설, 사인물, 담장, 편의 시설물, 안내시설물, 동 출입구 및 캐노피, 필로티, 평입면계획, 외부 난간 형태/높이 및 단지 조경 및 기타 주택법, 건축법 등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설계 변경 등은 현장여건 및 인허가 관청과의 심의, 협의 과정에서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업지 내부에 조성되는 공공기여시설(도로, 공공청사)는 공공시설물로 기부채납토록하고, 이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사업지 내부로 일반인이 통행, 사용 가능한 공공도로 및 공개공지, 공공청사가 계획되어 있으며, 사업지 내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도로, 공공청사 등)은 시설물 일체를 관련법령 및 해당 기간 협의에 따라 귀속 조치되며, 이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건물의 구조 및 지상/지하주차장의 기초구조는 굴토 후 지내력시험 결과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안전관리시스템을 위한 CCTV의 설치로 인한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향후 이에 따른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건축물의 색채, 형태(측벽 줄눈, 저층부 및 출입구 디자인, 판매시설 및 부대시설 디자인, 옥상 및 옥탑 구조물, 세대 및 부대시설 창호 크기포함), 패턴, 마감재, 사인물과 같은 외관 디자인은 시공 상의 문제나 향후 지자체 경관심의(또는 자문) 법규의 변경 및 시공과정상 변경될 수 있으며, 특히 옥상 및 옥탑 구조물의 경우 구조검토 등을 통해 재료 및 마감, 부재의 크기, 디자인 및 형태가 변경될 수 있으며, 벽체 및 기둥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 당 건물의 특성상 이삿짐의 이동시 승강기를 이용해야하며, 사전에 확인수인 하고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용부분의 시설물 (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은 건축허가도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실제 시공시 성능 및 미관 개선을 위해 관련법에 근거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시행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도시가스 공급을 위하여 부지 내 지역정압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설치위치 및 제반사항은 도시가스 공급 업체와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고, 부지 내에 설치 시 향후 정압실 건축물 및 부지제 공에 대한 계약의 승계의무가 입주민에게 있음. 지역정압기 설치 여부는 관련 공급업체와의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층에는 전기실, 기계실, 발전기실, 가압펌프실, 제연환풍등이 위치되어 있으며, 소음 및 진동의 발생으로 인한 생활권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빗물재활용을 위해 우수조가 설치되며, 유지관리에 따른 비용이 발생되며 해당비용은 관리비에 포함되어 부과됩니다.
- 배관 동파 방지를 위해 동파 우려 구역 주위 배관에 열선이 설치되며, 사용에 따른 전기료가 발생합니다.

- 근린생활시설 내 음식점 및 조리를 위한 주방시설을 포함한 점포가 입점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냄새, 소음, 진동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근린생활시설 내 입점자가 냄새 등의 유출을 막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지만, 완벽하게 차단되지 못하여 인근 호실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이점을 인지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화재 안전기준에 따라 설치된 제연설비인 제연덕트 급·배기구 설치로 상·하 호실간 생활소음이 전달될 수 있으나 이는 법적인 조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보행자 우선통로는 지상권 설정 하여 기부채납 할 예정입니다.
- 도시계획도로 기부채납은 인허가에 따라 변경 될수 있습니다.

2. 단지배치/조경

- 단지 내 공공장소인 공개공지, 휴게공간과 필로티, 어린이 놀이터, 관리사무소 및 보행로, 부대복리시설 등의 설치로 인접세대에 생활 소음피해, 실내투시로 인한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인접 동 및 인접세대, 해당 사업지 인근 고층건물, 주변단지의 신축 등에 의해 각 세대별 층수와 향에 따라 조망권, 일조권, 환경권,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공공장소인 공개공지, 휴게공간, 부대복리시설, D/A, 자전거보관소, 판매시설 등의 설치로 조망권, 환경권, 소음피해,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필히 견본주택 또는 현장방문을 통하여 사전에 확인하시어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조경 및 세부식재 계획은 수급여건 및 현장여건 관계기관의 협의 등의 결과에 따라 수종(규격, 수량 등) 및 수목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용부의 공용시설물(조경 수목 포함)에 대하여 이설, 증설, 변경 등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조경, 현관, 지하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를 수 있으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 (전기차 충전설비, 공용조명등 & 통신시설물, 단지 홍보용 사인물, 놀이시설, 휴게시설, 포장시설, 수목관리, 공용부 환기설비, 공용부 동파방지 열선시설 등)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보수/관리에 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외벽 등에 장식물, 조명 및 외부별도 마감재가 부착될 수 있으며, 외벽에 부착되는 장식물, 조명, 난간, 기타 부착장식물 등은 인접세대에 소음 및 눈부심 등을 일으킬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조경, 수경시설 및 조경수 식재위치는 입체적 단지 조화를 고려하여 설치나 식재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단, 규격이나 수량의 변경이 있을시 당초 계획보다 동등이상으로 시공됨), 관계기관 심의결과, 시공 과정 등에 따라 조경 시설물에 따른 조경 선형이나 포장 및 조경 시설물의 재료, 형태, 색채,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인허가 진행 및 본 공사 시 외관개선을 위하여 아파트 주동과 저층부의 외관디자인(마감재료 및 패턴디자인, 옥탑장식물, 몰딩, 창틀 모양 등), 사인물, 경관조명, 동출입구, 외부시설물(난간 디테일, DA, 조경패턴 등)은 구조 및 심의, 디자인의도에 의해 형태, 재질, 색채 등이 부위별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사항은 입주자의 개인취향에 의해 변경될 수 없습니다.
- 단지 우수수는 옥외배관 최종검토결과에 따라서 실시공 위치 및 개소가 조정 및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개공지는 단지 내부시설이나 관계법령에 의거 단지 외부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상시개방 되며, 인허가 협의에 따라 디자인, 범위 등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담장설치 등 인위적인 통제가 불가하며, 외부인 통행으로 인한 소음,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 동 현관, 지하 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르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101, 102, 103동 지상4층 데크 구간에 인허가 협의에 따라 보행로 지붕이 설치되며, 이에 따라 저층부 세대에는 시각적 간섭이 생길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 위치 확인바라며, 보행로 지붕의 크기, 형태, 디자인, 마감재 등은 실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상부에 전기인입을 위한 수전변 설비,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정압기 등이 설치되며, 상세 위치 및 크기 등은 각 공급업체(한전, 도시가스 등)에서 지정하므로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3. 부대복리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 단지 내에 계획된 부대복리시설은 다음과 같으며 개별요구에 의해 실구획 및 분할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단지 내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입주자(입점자) 및 외부 인근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은 입주민 자체적으로 하여야합니다. (관리사무소(MDF실, 방재실 포함), 어린이놀이터 1개소(옥외), 피트니스클럽, 주민회의실)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은 사업주체가 설치하고 운영 및 관리 등은 입주 후 입주자 부담으로 입주자가 직접 운영하여야 하고 사용검사 전 사용이 불가하며,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인수, 인계하기 전까지 위탁관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등이 설치된 곳의 상부세대는 이용에 따른 간섭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고, 냉난방시설에 따른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의 에어컨 실외기 및 탈취설비 설치구역은 지상 2, 3층에 설치될 예정이며, 이로 인한 미관저해 및 인근세대 소음유입 등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으니 사전에 위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부대복리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지상(지붕층 포함) 또는 내부에 설치하는 에어컨 실외기등으로 소음 및 진동의 불편이 야기될 수 있으며, 에어컨 실외기 등의 설비위치는 변동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내 비치된 도서를 통해 위치를 필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 주민공동시설 등 부대복리시설 내외부 디자인과 창조사양 및 규격은 시공 시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내부평면계획은 인테리어 특화디자인 계획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은 별도의 분양시설로서 공동주택단지와 별도구획이 불가하므로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 지상4층에 설치되는 주민편의시설 등으로 이용에 따른 소음이 발생할 수 있고, 환경권 및 사생활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등 부속동의 상부에 위치한 일부세대는 지상 또는 인근에 설치되는 에어컨 실외기 및 공조설비에서 발생하는 소음 및 열기에 의한 사생활권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의 구성 및 건축이용계획은 인.허가 과정이나 본 공사 시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관리사무소, 부대복리시설 등의 외관 및 색상, 재료 등은 시공 중 경미한 범위에서 변경될 수 있음.
- 관리사무소, 부대복리시설 등의 실 명칭은 추후 실용도의 성격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은 분양 시 제시한 기능으로 적용되고 설계변경을 통해 일부 실 배치 및 기능 또한 변경될 수 있으며,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부대복리시설 설계 및 제공되는 시설류에 대해서는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하여야 합니다.
-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 등 부대복리시설의 내부구획 및 마감재 등은 현장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시공자는 단지 내 커뮤니티의 공간만 제공하고 내부 집기, 비품 및 운영은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하여야 합니다.
- 분양홍보용 CG 등에 표현된 부대복리시설의 실 내부구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서 추후 입주자의 운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은 대관 인허가를 통하여 실사공시 위치, 다른 실로 변경/통합, 사용동선, 입면형태, 실내구획 등이 변경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면적의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내 입주민을 위한 A/S센터가 운영된 뒤 향후 주민회의실 등의 용도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업주체는 입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부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후 새로운 주택관리업체를 선정할 때 까지 부대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 등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제반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개별 세대에 부과됩니다.
- 시설별 주차계획 구분은 입주 후 관리주체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은 상업시설의 영업을 위한 화물차 등의 입, 출차 및 이용자들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전면 가로에는 주택 인.허가 및 기타 여건에 의해 가로수 및 조경식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계획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와 부대복리시설의 출입구 및 동선은 중복되어 같이 사용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불편이 야기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각 세대별 배치 차이에 따라 부대복리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이용성, 접근성 등 사용상의 차이가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계약할 세대의 위치 및 주변 배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각 호실별 천정속에는 공용 및 인접 호실용 각종배관 및 덕트, 가스배관 및 상부 호실의 각종 배관 등의 경로로 사용되어 소음발생 및 유지보수용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철거 및 이동할 수 없습니다. 이는 반드시 필요한 시설로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공용부 복도 및 외부 일부에 가스배관이 노출되어 설치될 수 있으며, 도시가스 공급을 위하여 부지 내 가스정압기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설치위치 및 제반사항은 도시가스 공급업체와의 협의과정에서 결정될 수

있고, 부지내에 설치 시 향후 정압실 건축물 및 부지제공에 대한 계약의 승계의무는 입점자에게 있습니다. 가스정압기로 인해 시각적 간섭 및 공간활용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반드시 필요한 시설로 추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호실별 급수, 가스, 에어컨은 기본 용량만 공급되며, 입점 후 가스용량, 급수, 에어컨 용량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계약자 부담으로 변경공사를 진행하고 필요한 인허가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각 호실별로 천정속에 급수배관이 1개소 제공되며, 계량기 이후 볼밸브로 마감하여 제공됩니다. 볼밸브 이후 공사(분기배관, 수전 등)는 입점자 공사분으로 시행하여야 합니다. 바닥에 배수용 배관이 1개소 제공되며, 별도의 배수구는 설치되지 않으며 배관 노출 설치로 일부 공간 사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배관의 제공위치는 실 공사시 선정되며, 별도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 추후 이에 대해 이의제기 할 수 없습니다. 주방등의 시설이 입점하는 경우 배수구 연결 시 유지차단장치(grease trap) 및 거름망을 의무설치하여 배수구가 막히지 않도록 조치 후 사용하여야 합니다. 각 호실별 별도의 급탕은 공급되지 않습니다.

- 각 호실별 가스배관이 1개소 제공(볼밸브+CAP마감)되며, 필요 호실은 가스계량기 및 개별분기배관 설치, 가스시설분담금 및 각종 인허가 사항을 입점자 공사분으로 수행하여야 합니다.

- 위치에 따라 일부 호실에 공용 옥내소화전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호실 사용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반드시 필요한 시설로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종 부대시설(근생 포함)의 에어컨 실외기 설치위치는 동에 인접하여 설치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인접동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호실별 천정속에 기계식 환기장치가 설치되며, 이를 위한 천정점검구 및 환기 디퓨져설치, 커튼박스 길이변경 등이 있을 수 있고, 장비 가동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천정 속 공간사용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각 호실별로 제공되는 기계환기장치는 평형에 따라 제품 사양 및 크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및 부대시설은 각 실별 냉난방을 위한 천정형 에어컨이 제공되며, 1대의 실외기에 다수의 실내기가 연결되는 멀티에어컨 방식이 적용됩니다. 용량은 평형에 따라 각 실별 부하량과 동시사용을 고려하여 설계된 기본 용량만 제공됩니다. 멀티에어컨 방식은 인근 호실과 실외기를 공통으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인접 호실의 실내기 고장 시 수리를 위하여 실외기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불편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추후 실내기 및 실외기의 수량 및 설치위치 등은 변경이 불가능하며, 추가적인 냉난방을 위한 시설은 입점자가 별도로 공사하여야 합니다. 냉방 및 난방은 계절에 따라 관리사무실에서 결정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인접 호실과 공용으로 실외기를 사용함에 따라 인접 호실과 다르게 냉방 또는 난방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요금은 각 호실별 사용전력량에 따라 분배되며, 냉방 및 난방을 위한 공용요금(유지관리 및 기본운전을 위한 전기요금 등)이 발생합니다. 각 층 실외기실과 인접한 호실은 소음, 진동 등의 간섭이 발생할 수 있으니, 각 시설의 위치를 명확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천정형 에어컨 및 실외기 등의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점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근린생활시설 내 주방배기를 위한 공용덕트가 실별 천정속에 제공되며, 메인덕트 이후는 덕트 사용을 위한 분기덕트공사, 주방후드, M.D(motorized damper) 설치, 제어용 배관/배선 및 연결스위치 등 연기배출시설을 사용하기 위한 필요한 시설들을 입점자가 개별적으로 설치 후 사용하여야 합니다. 공용배기철크 및 탈취장비는 지상2층과 3층에 공용으로 설치되어 제공되며, 유지/보수/관리 등을 위한 관리비가 부과됩니다. 제공되는 주방배기덕트 및 탈취장비의 용량은 소규모 주방배기점포를 위해 제공되는 최소한의 용량이며, 전문음식점 및 대규모 점포 등은 입점 시 제공되는 주방배기덕트의 사이즈 부족 및 탈취용량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전문음식점 및 대규모 점포 등은 별도의 주방배기를 위한 시설을 입점자가 추가로 설치해야 하며 소음, 진동, 냄새 등의 민원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추가 시설을 입점자가 직접 공사해야 합니다.

- 주방배기 연결공사시에는 소방법규에 따른 소방시설을 입점자 공사분으로 수행하여야 합니다.

- 주방배기철크 및 탈취시설의 장비운영에 따른 소음 또는 냄새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점포별 동시사용량에 따라 배기 풍량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용도별로 설치하지 않고 통합으로 설치된 부분(공용부분의 상하수도, 배기시설, 기계장비 등)에 대한 유지, 보수, 관리 및 관리비는 관리규약에 따라 부과될 예정임을 사전에 인지하고 승인하여야 함.

4. 지하주차장

- 단지 진·출입부는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심의결과 및 연접도로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조성된 것으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 진입램프는 사업부지 북측에 1개소가 위치하며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 업무시설(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공공청사 등 공동으로 사용됩니다.
- 전기차 충전시설은 지하 각 층별 1개소씩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시설의 위치는 실시공시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충전시설 설치 완료 후의 위치변경이나 지정은 불가합니다.
- 지하주차장에서 세대로 출입하는 동 출입문은 동별세대별로 구조적 조건(통로폭 등)이 상이하어 각각 동 출입문 크기 및 구조가 다를 수 있으며 지하층 구조에 의한 동 출입구 형태가 동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지하1층~지하3층 일부 주차장은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공공청사 전용, 지하3층 일부~지하5층 주차장은 공동주택 전용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 층별 주차구획에 따라 지하2층에서 공동주택은 출입 불가하며, 지하4층~지하5층에서 오피스텔은 출입 불가합니다.

지하주차장 사용 구분 및 구획은 추후 관리주체의 관리규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환기 및 결로방지를 위해 송풍기 가동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전기료 등 유지관리 비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및 1층에서 아파트로 출입하는 동별 출입문은 세대별로 구조적 조건(통로폭 등)이 상이하어 각각 동 출입문 크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기계실 및 각동 지하에는 아파트의 급수, 급탕, 난방 및 배수를 위한 장비가 설치되어 있으며, 장비 가동 시 발생한 소음이 저층부 세대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천정에는 공동주택,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공공업무시설 등의 각종 배관, 배선, 장비 등이 노출될 수 있으며, 배관 및 덕트 등의 설치공간 및 루트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과 각 동을 연결하는 통로공간과 지하부분 계단실(엘리베이터층)은 하절기에(외기 온도)차이로 인해 부득이 결로가 발생될 수 있으며, 되도록 환기시설을 가동하여 결로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 지하주차장은 일부 구간에서 교차로가 형성되며, 교차 부분에서는 보행자 동선과 차량 동선의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지하층에는 저수조, 펌프실, 전기실, 발전기실 등이 설치되어 있어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등 단지 내 부대시설 사용에 대하여 각 동별 사용 시 계단실 등의 위치에 따라 거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배치 및 사용상에 대해 충분히 확인 후 계약자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준공 입주 후 지하주차장 및 기타공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피트공간은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 진입가능 높이는 지하1층 2.7m, 지하4~5층 2.3m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 주차장 진출입램프 상부 세대는 차량통행 및 출차표시등에 의한 소음과 눈부심 현상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 될 수 있으며, 일부 구간에서 교차로가 형성 되며, 교차 부분에서는 보행자 동선과 차량 동선의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주차장은 입주자 전체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 각 동별, 세대별로 주차위치를 지정하여 주차할 수 없으며, 상부에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됩니다.
- 단지 내 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 될 수 있으며, 확장형 주차비율 및 경형 주차비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의 주차장은 주차대수 최대 확보를 위하여 기둥 간격이 일정하지 않아 일부 주차면에는 기둥과 간섭(운전석 및 보조석)되어 승하차시 불편할 수 있습니다.
- 전기차 충전소의 사용요금 및 전기 기본료는 사용자 부담 방식으로 요금 납부하여야 하며, 미사용시 기본료는 공용부분 관리비로 세대 면적에 따라 균등 부과 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에는 정화조가 설치되며, 정화조로 인한 악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지하1층에 재활용(쓰레기)집적소가 설치되며 조업을 위한 차량 이동 및 주차가 발생함에 따라 이에 따른 악취, 소음, 진동 등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5. 공동주택주동

- 101동, 104동, 105동은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 103동은 업무시설(오피스텔), 102동은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과 업무시설(오피스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저층부 마감자재는 동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마감재는 설계 및 시공성에 따라 타일 또는 석재 등 선택적으로 적용되며 의견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피난계단에는 창호 자동 개폐기가 설치될 수 있고, 피난계단 방화문의 임의 사용으로 인한 불량 발생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동 옥상 출입문에는 비상개폐장치가 설치되어 있어 평상시에는 폐쇄되어 있으나 화재 시 개방되어 사용이 가능합니다.
- 일부 동은 옥상에 공동시청 안테나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주동 색채 및 옥외시설물은 향후 상위 지침변경 및 인허가 과정 중 입주자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옥상구조물 상부는 도장시공을 하지 않습니다.
- 각 동의 일부세대는 조망 및 채광이 불리하며,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시 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옥상 및 옥탑층에 의장용 구조물, 위성안테나, 피뢰침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예정에 있으며, 이로 인한 조망 및 빛의 산란 등에 의한 사생활침해, 소음,분진 등의 피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각 동 최상층과 승강기 승강로 인접세대는 승강기 기계실 설치로 인해 일부 소음, 진동이 발생할 수 있고, 승강기, 각종 기계, 환기, 공조, 전기 등의 설비 가동으로 인한 진동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부 세대는 옥외 보안등에 의한 간섭이 있을 수 있으며, 옥외보안등 관리에 따른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관리규약에 따릅니다.
- 각 세대의 엘리베이터 홀과 현관문 사이의 공간은 공용면적이므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동 인근에 발전기용 급배기 D.A가 설치되며, 발전기 가동 시 소음 및 진동, 연기가 발생할 수 있어 생활권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시설물(자동문,우편함) 등은 시설물의 위치, 규모 및 색채는 심의기준 및 현장여건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의 입면, 조경 등은 특화 및 경관심의 등 인허가 협의과정에서 일부 시설물(편의시설, 안내시설물, 아파트단지명 등), 입면, 지붕, 기타 구조물의 형태, 색채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관계법령의 범위에서 정한 경미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PD, AD, PIT공간의 마감 미시공으로 인한 구조적 내구연한 또는 안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마감을 처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세대 현관에 스마트도어카메라 설치로 인하여 동 출입구에 안내표지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 단지는 안전관리 시스템을 위하여 CCTV를 설치함에 따라 프라이버시가 불리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단지 내 공개공지는 입주민 뿐 아니라 공중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옥외안테나 및 중계장치가 각동 옥상층에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불편이 있을 수 있으나 설치위치 지정 및 변경은 불가합니다.
- 일부 동의 공용구간(PS, AD)은 공동주택,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및 공공업무시설의 정화조 배기용 덕트의 설치공간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이는 반드시 필요한 시설로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지상2층 및 지상3층 등에 부대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공공업무시설을 위한 실외기실 및 주방배기탈취기실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각종 배기팬 및 악취제거시스템(근린생활시설 주방 탈취설비) 및 실외기가 설치되어 인접 세대에는 소음, 진동, 악취로 인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공사 시 현장여건에 따라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이는 반드시 필요한 시설로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계약 전 설치위치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단위세대

<공통>

- 본 주택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전세대 확장형으로 일괄 시공되며(공급금액에 발코니확장비용 포함), 비확장형으로 선택할 수 없음.
- 경량벽체로 설치된 실내 벽체는 일반 벽식구조에 비해 소음전달이 클 수 있으며, 별도 지정된 장소(입주 시 안내) 이외에는 중량물 설치나 못박음 등이 곤란하며 중량물 설치 및 못박음 시에는 벽체의 파손 또는 설치된 중량물의 탈락이 발생할 수 있고 소음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벽체 내부에는 전력선, 통신선 및 설비배관(급수, 온수 등)이 매립되어 있으므로 벽체에 못박음이나 드릴을 이용한 작업 시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매립배관 파손으로 인한 누수 등 인근세대 피해에 대한 책임 및 복구의무는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현관, 발코니, 화장실 단차는 세대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별 위치에 따라 승강기, 각종기계, 환기설비 등의 설비 가동으로 인한 진동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바닥 배수가 필요한 공간(옥상, 필로티, 욕실, 발코니 등)의 바닥 높낮이는 설계도면 치수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아파트)의 주거공용면적(계단실 코어) 및 기타 공용면적(부대복리시설, 기계실, 주차장등)은 세대 전용면적에 따라 균등하게 계산 배분되었습니다.
- 세대 내외 방법장은 설치되지 않으며, 설치를 원하는 세대는 개별적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 일부 세대의 경우 동일동의 계단실 등에 의해 일부실의 조망, 일조, 소음, 프라이버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평면의 전용면적은 확장형을 위한 합리적인 평면설계를 위하여 법정 발코니 초과면적이 일부 산입되어 있으므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고객의 개별 선택에 따라 가변형 벽체가 설치 또는 미설치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며, 모델하우스를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별 현관 전면에 엘리베이터홀 설치로 프라이버시 간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청약전에 분양카달로그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각 세대별 현관 전면에 승강기 및 계단실 설치에 따라 채광이 부족한 세대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 전에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별 대피공간은 화재 발생 시 대피를 위한 공간으로 내부에 물건 적치 등을 금합니다.
- 발코니에 보일러, 배수관, 우수관 등의 설비로 인하여 소음,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의 바닥, 난간 등의 마감재, 형태, 재질, 규격 등은 실사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104동 동측 코어 세대인 49A, 49B2 타입은 계단실형이 아닌 복도형 세대로, 계단실형 세대에 비하여 복도를 이용하는 타인의 보행에 따른 소음, 진동, 시선침해, 사생활 간섭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이를 인지하시고 계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근린생활시설 내 음식점 및 조리를 위한 주방시설을 포함한 점포가 입점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냄새, 소음, 진동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탈취시설이 설치되지만, 완벽하게 차단되지 못하여 인근 세대 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이점을 인지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마감재>

- 세대내 설치된 플라스틱 창호 사용 시 심한 충격을 반복해서 가할시 변형이 발생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허가 과정 및 본 공사 과정 중 사용성 개선을 위해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 붙박이장, 신발장, 욕실장, 주방가구 등 설치되는 가구의 비노출면(후면, 하부, 천장)에는 마루, 타일, 도배 등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발코니확장시 확장부위에 설치되는 발코니 샷시의 형태 및 사양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실사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 경량벽체에는 액자, 선반 등 하중을 견디는 고정 가구 및 기계의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이익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위세대 마감재재 내용은 주택형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 및 모형, 홈페이지 상의 마감재리스트, 인쇄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도면상이 할 경우 견본주택을 우선으로 함)
- 침실, 욕실 등의 벽체 두께 변경에 따라 문틀의 폭(벽체 두께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욕실, 현관 등은 바닥 단차설계가 되며, 출입문 개폐 시 신발 걸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실내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발코니 샷시 및 유리창 표면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익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동주택 특성상 세대 내 가구배치, 평면배치, 기타 품목 시공위치는 입주자 개인별 변경 요청을 할 수 없으며, 변경 필요 시 준공 및 시설물 인수인계 후 입주자 개인이 직접 시행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외벽, 측벽, 세대간벽은 발코니 확장 등으로 단열재 추가 설치 시 구조체 및 가구 등이 다소 축소 변경될 수 있으며, 인접세대 및 동일세대 내 각 부위별 확장여부(상하좌우)에 따라 단열재 설치로 인한 벽체 돌출 및 실사용 면적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에도 발코니 비확장 부위가 있으며, 이 때 비확장 발코니 중 외기에 면하는 일부 벽체는 결로방지용 얇은 단열재가 설치되어 실제 발코니 사용면적이 축소될 수 있으며 벽면 및 천장에 단열 설치로 인한 단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창호 및 문의 형태 및 위치는 견본주택 및 분양안내책자 기준으로 시공되나 기능상의 향상을 위해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 방향, 형태가 실제 시공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확장 부분의 외부 샷시는 이중창호 등으로 설치되어 향후 입찰 결과에 따라 창호사양 (제조사, 브랜드 및 창틀, 하드웨어, 유리 등) 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싱크장 하부에는 온수분배기 등이 설치되며, 이로 인해 싱크장 하부의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으며 수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욕실 천장에 상부세대 급수를 위한 분배기 및 상부층 배수배관이 설치 됨에 따라 유지관리를 위한 점검구가 천장에 설치됩니다.
- 식탁용 조명기구는 보편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으로 예상되는 위치에 설치하였으며, 위치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거실 안방 등에 설치될 수 있는 에어컨용 콘센트는 에어컨 실내기 조작 전원용이며, 실외기용 대용량 전원은 반드시 실외기에서 공급받아야 합니다.
- 에어컨 냉매 배관은 안방과 거실에만 일괄 설치되며, 위치별로 선택 할 수 없으며, 추가적인 위치에 에어컨 설치시 별도의 냉매 배관 공사가 필요하며, 이는 입주자가 직접 공사하여야 합니다.(단, 천정형 에어컨을 옵션으로 선택 시 냉매 배관 및 에어컨용 콘센트가 설치되지 않으며, 시공비도 제외되지 않음)
- 벽걸이TV 설치시 전선, 케이블 등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세대내 가구, 가전 및 도기의 모양, 재질, 색상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동급이상의 제품)설치여부는 계약자간의 계약 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 및 발코니 바닥마감 레벨은 설계 치수로 실시공사 시공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배수드레인은 시공시 위치 및 형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우수 배관, 바닥드레인 및 수전, 위치 및 개소는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및 공용부의 전기분전반, 통신 단자함, 조명, 콘센트, 통신수구 및 스위치의 위치는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내 조명기구, 홈네트워크 관련제품, 세대 분전함, 통신단자함, 배선기구류의 설치위치는 본 공사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홈네트워크 관련 제품의 경우, 본 시공시 설치 시점에 따라 일부 디자인 및 기능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각 세대 전기분전반, 통신단자함은 관련 법규가 정한 기준에 맞추어 노출 또는 매립 설치되며 안방, 침실 내 도어 후면 등에 설치 될 수 있음(주택형별로 설치되는 위치가 상이할 수 있음)
- 지상 일부구간에는 무선통신 안테나가 설치 될 수 있으며 추후 설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내부 마감재, 가구, 전기 설비 설치물이 시공되면서 일부 사용할 수 없는 공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설치되는 액세서리(휴지걸이, 수건걸이, 수전류 등) 및 기기(선풍통, 설비 및 전기 각종기기) 등의 설치 위치, 개소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에 따른 일부 배선기구 및 조명기구의 사양, 수량, 종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내 설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의 다양한 두께로 인하여 안목치수가 도면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엔지니어드스톤 및 세라믹 타일은 재료의 특성 상 이음매 부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현관중문은 장식성도어로 차음 및 단열을 위한 기능성도어가 아니며, 본공사 시 도어 프레임 및 유리의 형태, 색상 제조사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에 적용된 가구 하드웨어는 본 공사시 동등 이상의 제품(제조사, 사양, 규격 등) 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장생산 자재(타일 등)의 경우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합니다.
- 세대 내 목문, PVC문의 상하부면의 마감재는 부착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사 시 시공성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타일의 고유한 물성에 의하여 휨발생이 생길 수 있으며, 타일나누기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바닥 마감재는 견본주택과 폭 및 색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침실, 욕실 도어에 손끼임방지 장치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기계설비>

- 각 세대는 개별난방 방식으로 발코니에 보일러가 설치되며,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배관으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겨울철 장비고장 및 배관의 동파를 방지하기 위하여 발코니의 창문을 필히 닫힘(CLOSE)상태로 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리 소홀로 인한 하자발생의 책임은 입주자분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동절기 보일러 연도의 결로로 인해 낙수가 발생할 수 있으며, 동절기 결로낙수와 우수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각 동에서 세대로 공급되는 가스배관은 외벽에 노출 설치되며, 가스계량기 설치에 따라 발코니 내 일부공간의 사용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취사용 가스배관은 별도로 제공되지 않습니다. 이점 유념하시어 계약하시기 바랍니다(단, 실시설계 시 변경될 수 있음)

- 당 현장은 욕실배관이 해당 층 하부에 설치되는 층하배관방식으로 시공될 예정이며, 추후 유지보수를 위하여 하부세대 욕실내 점검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욕조하부 및 샤워부스 바닥, 발코니, 일부 싱크대하부 공간등은 욕실 난방이 제공되지 않음
- 욕실 천장에 점검구가 설치될 예정이며, 욕실 내 설치되는 배수구 및 환기팬, 천정점검구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일부 유니트에는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음.
- 복도 및 세대 점유공간 천장 내부 또는 상부장의 공간이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및 공공업무시설의 기계설비 및 전기시설물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음.
- 세대온수분배기, 급수급탕분배기, 세대분전함, 통신단자함 등이 세대 주방가구 싱크볼 하부, 신발장, 창고장 또는 침실벽박이장의 하부 또는 배면 침실내 도어 후면 등에 설치될 수 있음.(주택형별로 설치되는 위치가 상이할 수 있음)
- 본 공사시 싱크대 하부에는 온수분배기가 설치될 예정으로, 이로 인해 싱크대 하부공간이 부분 수정될 수 있으며 수납공간이 줄어들 수 있음.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은 유상옵선품목으로 선택하지 않을 경우 냉매배관이 2개소(거실 스탠드형 기준 1개소, 침실 벽걸이형 기준 1개소) 제공됩니다. 시스템에어컨을 위한 냉매배관 및 드레인 배관은 설치되지 않음.
- 에어컨 매립배관이 설치될 경우 해당 부위는 별도의 마감재로 설치될 수 있으며 매립배관 위치는 실사공시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에 스프링클러헤드 및 주방 직배기 설치를 위하여 거실 또는 침실 커튼박스의 길이 및 깊이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욕실배기는 옥상에 무동력 흡출기 배출방식으로(무전원 고정식 흡출기) 설치되며, 최상층 세대의 경우 무동력 흡출기와 근접해 있어 악취, 소음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주방배기는 각 세대 해당층 직배기 방식으로 설치되며, 이로 인한 소음, 진동 및 인접세대의 냄새 등으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니, 이를 반드시 인지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거실에는 별도의 디퓨져가 제공되지 않으며, 타입별로 각 실에 설치되는 디퓨져의 수량 및 설치위치 등은 실사공 시 다를 수 있습니다. 거실에 설치되는 카세트형 환기시스템은 무선리모컨 동작입니다(1실 1개소 제공). 장비설치 및 덕트설치를 위하여 일부 커튼박스 길이변경 등이 있을 수 있으며, 장비 가동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본 공사 시 전열교환기의 사양, 제조 및 설치업체는 변경될 수 있으며, 설치위치도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각 층 수전, 드레인, 선홍통, 보일러 등의 설치 위치 및 개수, 사이즈는 변경(위치변경, 추가 또는 미설치 등)될 수 있음.
- 세대 환기용 급배기 슬리브 위치 등은 설비, 전기 계통을 고려하여 일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
- 지하층에 저수조, 기계실, 빗물저수조, 정화조, 전기실, 발전기실 등이 설치되므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발전기실에 인접한 경우 발전기의 비상가동 및 주기적 시험가동시 소음, 진동 및 매연이 발생할 수 있음.
- 지하층에 빗물저수조 및 정화조가 설치될 예정이며, 위치 및 면적은 본사공시 현장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는 물청소를 위한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으며, 일부 발코니에만 선홍통 및 배수구가 설치됨
- 일부 저층부 세대의 발코니에는 상부세대들의 배수 입상관이 하나 이상 더 시공될 수 있음.
- 단지 지하에 공동주택,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및 공공업무시설의 정화조가 설치될 예정이며, 배기덕트가 공용부분 P.D.를 사용하여 일부동의 옥탑층으로 배출될 예정입니다. 인근 동은 이로 인한 소음 및 분진, 냄새 피해 등이 생길 수 있음. 이는 반드시 필요한 시설로 추후 이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

<전기설비>

- 발코니 확장에 따른 일부 배선기구 및 조명기구의 사양, 수량, 종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옵션 선택에 따른 일부 배선기구 및 조명기구의 사양, 수량, 종류 및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을 옵션품목으로 선택하지 않을 경우 실외기실내 고용량스위치와 침실에 에어컨 실내기용 전기콘센트가 설치되고, 옵션을 선택하는 세대는 침실에 에어컨 실내기용 전기콘센트가 미설치됩니다.
- 전기실/발전기실과 인접한 세대는 매연, 소음 및 진동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상 일부구간에는 무선통신 안테나가 설치 될 수 있으며 추후 설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전기차 충전장치 및 무인택배 보관함은 각 동의 공용홀로부터 접근의 형평성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분전반 및 통신단자함의 설치위치는 실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옥탑층에 위성안테나, 피뢰침, 경관조명, 태양광 발전설비, 이동통신용 중계기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예정이며 이로 인한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사생활의 침해, 안면방해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동별, 라인별로 설치되는 엘리베이터의 대수, 인승, 속도 등은 관계법규가 정한 기준 및 심의조건 등에 맞추어 계획되었으며 층수 및 사용 세대수의 차이를 고려하여 임의로 조정하지 않아 동별, 라인별로 사용인수 대비 대수 및 인승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각 동의 최상층에 승강기 기계실 설치로 인해 일부 소음, 진동이 발생(층수 차이로 인해 일부 세대 침실은 기계실과 인접하여 배치될 수 있음) 될 수 있고 승강기, 각종 기계, 환기, 공조, 전기 등의 설비 가동으로 인한 진동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TV공청 안테나 및 위성수신 안테나는 전파수신이 양호한 아파트 지붕(옥상)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 엘리베이터 승강로에 인접한 세대는 엘리베이터 운행 중에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이 전달될 수 있어 계약 전 위치 등을 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위세대 내 조명기구, 홈네트워크 관련제품, 세대 분전함, 통신단자함, 배선기구류의 설치위치는 본 공사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홈네트워크 관련 제품의 경우, 본 시공시 설치 시점에 따라 일부 디자인 및 기능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각 세대 전기분전반, 통신단자함은 관련 법규가 정한 기준에 맞추어 안방, 침실 내 도어 후면 등에 설치 될 수 있음(주택형별로 설치되는 위치가 상이할 수 있음)
- 현관 신발장의 경우 세대분전반과 통신단자함 설치공간 확보를 위해 동호수에 따라 견본주택과 설치방향이 상이할 수 있음.
- 신발장 내부에 세대분전반, 통신단자함 등이 설치될 경우, 이로 인해 신발장 내부 사용면적이 감소하거나 가구내부 구성이 변경될 수 있음.
- 마주보는 미러형 타입의 경우 전기기기(월패드, 세대분전반, 통신단자함 등)의 위치가 간섭에 의하여 세대간 상이할 수 있음.
- 세대내부 마감재, 가구, 전기 설비 설치물이 시공되면서 일부 사용할 수 없는 공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및 플러스옵션 선택에 따른 배선기구 및 조명기구의 디자인, 사양, 설치위치, 설치수량, 종류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는 미설치 될 수 있습니다.
- 플러스옵션 선택에 따라 전기분전반 내 전기차단기 설치가 상이할 수 있으며, 해당 옵션을 선택하지 않을 시 해당 기능을 위한 전기차단기는 미설치됩니다.
- 푸르지오 스마트 홈 서비스 중 일부 홈네트워크 제어 기능은 단지 내에 고정 IP 회선이 연결되어야 가능합니다.
- 고정 IP는 3년간 무상서비스로 공급되며 그 이후에는 유상으로 전환됩니다.
- 푸르지오 스마트 홈 서비스는 무상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서비스 이용 신청이 필요합니다.
- 푸르지오 스마트 홈 서비스는 무상 제공이 원칙이나 당 사의 정책에 의해 일부 유상으로 전환될 수도 있습니다.
- 푸르지오 스마트 홈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홈네트워크 연동기기(조명,난방,환기,가스밸브차단 등) 외에 IoT 가전 연동제품(소비자가 별도구매)은 푸르지오 App에 연계되는 이동통신사(KT,LGU+,SKT) 및 가전사(삼성전자 등)의 App 기능을 통해 구현 가능합니다.(연계되는 이동통신사나 가전사는 각 사의 정책에 따라 연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푸르지오 스마트홈 앱으로 연동되는 홈넷 및 3rd 파티들의 하자보증기간은 각 기기별 관련 법규에 따릅니다.
- 푸르지오 스마트홈과 연계되는 이동통신사 혹은 가전사의 음성인식 스피커는 소비자가 별도로 구매하여야 합니다.
- 푸르지오 App과 연계되는 이동통신사 App 서비스 이용 조건은 사용자와 통신사와의 계약내용에 준하며, 이동통신사의 서비스 정책에 따라 추후 변경 및 종료될 수 있습니다.
- 이동통신사의 앱을 통해 IoT 가전 연동기능을 사용할 경우, 이동통신사의 정책 및 가전사(삼성전자, LG전자 등)의 정책변경에 따라 이용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IoT 가전기기제어는 세대 내에 무선인터넷 환경(Wifi)이 구축되어야 제어 가능합니다.(소비자가 별도 구축)
- IoT 가전은 이동통신사 별로 연동가능한 모델이 상이하니 통신사의 App을 통해 연동가능한 모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삼성전자의 스마트 생활가전 연동 서비스를 위해서는 삼성전자의 IoT 기능이 있는 생활가전제품을 입주자가 별도 구매/설치 후 이용 가능 하며, SmartThins 앱에 제품

등록 및 푸르지오 스마트홈 어플리케이션 연동 등 사전 등록 과정이 필요합니다.

- 푸르지오 스마트홈 앱을 통해 연동가능한 삼성전자 생활가전 제품은 9종 가전(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드레서, 건조기, 로봇청소기, 공기청정기, 식기세척기, Smart TV)이며, 상세 모델명은 삼성전자 홈페이지 (www.samsung.com)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푸르지오 스마트홈 앱과 연동하여 이용 가능한 스마트 생활가전 연동 서비스 기능은 개발 여건에 따라 적용 시점이 달라질 수 있으며, 제공 기능도 당사 및 삼성전자의 운영 정책에 따라 사전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스마트 생활가전 연동 서비스를 위한 삼성 SmartThings 앱 사용시,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6.0이상 iOS 10.0 이상부터 지원(아이폰의 경우 아이폰 6 이상부터 지원) 가능합니다. 빅스비 사용시, 안드로이드 7.0 누가 이상 iOS 10.3 이상부터 지원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삼성전자 홈페이지(www.samsung.com/sec/apps/smartthings/), 빅스비 사용환경은 삼성홈페이지(www.samsung.com/sec/apps/bixby/)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삼성전자의 스마트 생활가전 연동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댁내에 와이파이 환경이 구축되어야 합니다.(소비자 별도 구축). 또한 삼성전자의 SmartThings 앱을 통한 세대내의 각 종 홈넷 기기의 제어 서비스는 입주기간 종료 후부터 3년간 무상이나, 무상기간 이후 홈IoT 플랫폼 제공사 운영정책에 따라 유상으로 전환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상 전환 시 해당 플랫폼 제공사의 정책에 따릅니다.
- 단지내 조경식재, 각종 외부조명, 홈네트워크 설비 등의 관리에 따른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 후 관리규약에 따름.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 월패드, 콘센트/스위치류, 전자식스위치, 온도/환기스위치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예시로 설치되었으며, 본 공사 시 설치위치, 설치수량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 품목은 미설치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설치 시점에 따라 일부 디자인 및 기능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류는 본 공사 시 조도개선 및 자재생산업체 부도, 생산중단 시 동등(자재단가)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건립되지 않은 세대의 조명기구, 콘센트/스위치류, 전자식스위치 등의 디자인, 사양, 설치위치, 설치수량 등은 건립세대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복도 및 세대 점유 공간 천장 내부 또는 상부장의 공간이 기계설비 및 전기사설물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주택형별로 설치되는 위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입주 후 세대 내 조명기구 및 스위치와 관련된 인테리어 공사 또는 하자보수 이슈 발생 시 반드시 해당 제조사로 문의 바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발생하는 제반사항에 대해서 시공사는 귀책사유가 없습니다.
- 지하층에 전기실, 발전기실이 설치되므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발전기실에 인접한 경우 발전기의 비상가동 및 주기적 시험가동 시 소음, 진동 및 매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는 안전관리 시스템을 위하여 주요 개소에 CCTV를 설치함에 따라 사생활권이 불리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계약 전 이점 양지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 현관에 스마트 도어카메라 설치로 인하여 동 출입구에 안내표지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발코니>

- 세대 발코니에 우수흡통 및 배수관이 노출되어 우기 시 배수소음이 발생될 수 있음.
- 평형별로 에어컨 배관이 다르게 설치되어 있으며 에어컨 실외기로 인한 소음이 내부로 전달될 수 있음.
- 발코니는 비난방 구역으로 발코니에 설치된 수전류, 배수배관, 배수트랩(Trap) 등이 겨울철에는 동결 또는 동파될 수 있음.
- 발코니 면적은 확장 전(비확장형) 기준으로 확장형의 실 유효면적과 상이할 수 있음.
- 각 세대의 발코니에 선흡통 및 드레인 등이 시공된 경우 발코니 사용 및 우천 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전후면 발코니 및 콘크리트 난간 높이는 동 위치 및 층수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함.

■ 기타

- 본 “신길 AK 푸르지오”는 투기지역에 공급되는 공동주택으로서 등기 시점까지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며 이후 부동산 거래 시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추후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2017년 1월 20일부터 체결하는 최초 계약자는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부동산거래신고’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 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최종 건축허가 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수락 하에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하고 또한, 건축허가 변경 등 관련 법규에 대한 제반서류는 요청 당사자가 징구하여 사업주체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부대복리시설 : 기계실, 전기실, 관리사무소, MDF실, 방재실, 주민회의실, 피트니스클럽 등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5조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에 의거 적용 됨

■ 친환경 건축물 성능수준 표기 등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1호

구분	적용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필요시)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고기밀창호	적용	KS F2292 창호의 기밀성 시험방법에 의한 성능 2등급 이상 적용
	고효율기자재	적용	변압기, 전동기, 펌프 고효율기자재 적용
의무사항	대기전력차단장치	적용	대기전력차단장치: 거실 침실 주방 / 각 실 1개소 적용
	일괄소등스위치	적용	세대내 일괄소등장치 적용 - 60㎡미만 미적용 / 세대내 1개소
이행여부	고효율조명기구	적용	세대 및 공용부위 조명기구 고효율기자재 및 동등 이상제품적용

VI 기타 주요사항

■ 감리회사 및 감리 금액

구분	건축	전기	통신	소방	비고
회 사 명	(주)디에이그룹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 사무소			(주)한백에프앤씨	
감리금액	1,394,800,000			358,600,000	

[단위 : 원 / VAT포함]

* 감리금액은 감리회사와의 계약변동 등으로 인해 증가 될 수 있음.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본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한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입니다.

보증서번호	보증금액	보증기간
제01282021-104-0002700호	151,667,220,000원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까지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보증채무의 내용(제1조),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제2조), 보증사고(제4조)

○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약관 제1조)

공사는 「주택도시보증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상복합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 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건축주 또는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상복합주택】 주택 이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에 건축하는 경우의 주택을 말하며, 이 경우 그 주택과 함께 동일건축물에 건축되는 일반에게 분양하는 복리시설(주택 이외의 시설중 오피스텔을 제외한 시설을 말합니다. 이하 "복리시설"이라 함) 및 오피스텔을 포함합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또는 건축허가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친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보증약관 제2조)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허위계약·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보증서발급(주택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공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공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0.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대출금의 이자
11. 보증사고 전에 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 이행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4.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 : 홈오토, 발코니 샷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 등)과 관련한 금액
15. 주채무자·공동건축주(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건축주(공동사업주체)·

시공사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공동건축주(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공동건축주(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②공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승인일(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기재된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공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 보증사고 (보증약관 제4조)

①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상복합주택분양계약(이하 "분양계약"이라 함)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상복합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보증서 발급일을 말한다)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승인(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승인(동별사용검사)을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②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같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②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같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관리형 토지신탁 고지사항

본 사업은 위탁자 에이엠플러스자산개발(주), 시공사 ㈜대우건설, 수탁자 대한토지신탁(주) 등 간에 체결한 관리형토지신탁계약에 따라 실질적 사업주체인 위탁자의 사업비 조달, 시공사의 책임준공, 수탁자의 신탁사무처리를 통해 진행되는 관리형토지신탁사업으로써 본 조의 고지사항은 다른 일반조항보다 우선하며, 분양계약자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 「본 사업은 시행자인 에이엠플러스자산개발(주)가 대한토지신탁(주)에 시행을 위탁해 진행하는 관리형토지신탁사업으로서, 실질적인 사업주체는 위탁자인 에이엠플러스자산개발(주)이고, 대한토지신탁(주)는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의 수탁자로서 의무를 부담한다.」
2. 「공급대금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납부는 '대한토지신탁(주)'명의로 개설된 분양수입금 관리계좌로만 입금가능하며, 동 계좌로 입금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납부로 인정 하지 아니하고, 분양계약은 무효로 한다.」
3. 「본 공급계약은 신탁법에 의거 위탁자 에이엠플러스자산개발(주) 및 수탁자 대한토지신탁(주)가 체결한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공급계약으로 본 공급계약 대상 재산에 대한 일체의 하자담보책임(준공검사전 발생하자 포함)은 관계법령에 의거 위탁자인 에이엠플러스자산개발(주) 및 시공사인 ㈜대우건설이 부담하며 수분양자는 대한토지신탁(주)에게 하자보수 및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4. 「본 공급계약과 관련하여, 수탁자는 공급대상 목적물인 신탁재산을 보전하고, 준공 후 공급금액 완납자에 대하여 소유권이전 절차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러나 수탁자가 공급계약상 공급자로서 부담하는 모든 의무는, 관리형토지신탁계약상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 범위로 그 책임이 한정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탁자가 그 책임을 부담한다.」
5. 「신탁해지, 신탁목적 달성 등의 사유로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그 즉시 모든 공급계약에 대하여, 개별 공급계약에 따라 공급 대상 목적물의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한 경우에는 그 즉시 해당 공급계약에 대하여, 공급자이자 매도인으로서 대한토지신탁(주)이 가지는 일체의 권리·의무(손해배상·의무 포함)는 위탁자 겸 수익자 에이엠플러스자산개발(주)에게 면책적·포괄적으로 이전(승계)된다.」
6. 「사업의 안정적 진행을 위하여 분양대금이 토지비, 공사비 등 PF대출금의 상환 등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
7. 「본건 공급대상에 대한 설계 및 시공은 분양계약체결일 이후 내장 및 외장 재료의 수급 여건, 현장 시공 여건, 수분양자의 편의성 제고, 관련 법규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수분양자에 대한 사전 통보 없이 불가피하게 변경될 수 있으며,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서 관련 법령상 변경에 필요한 절차를 거치고 그 변경으로 인하여 기능적·객관적 하자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수분양자는 위 변경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8. 「공사도급계약에서 정한 시공사 교체사유 발생시, 시공사 교체 및 이에 수반되는 건축물브랜드·명칭 변경 등이 있을 수 있으며, 수분양자는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 시행사, 시공사, 위탁사 및 분양대행사

구분	사업주체(신탁사)	시공사	위탁사	분양대행사
상호	대한토지신탁(주)	(주)대우건설	에이엠플러스자산개발(주)	(주)미드미디앤디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7, 26층, 33층 (아셈타워 삼성동)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70, 에이동(을지로4가, 씨밋타워)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331 (서초동, 광일플라자빌딩 17층)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701호(서초동, 강남빌딩)
법인등록번호	110111-1492513	110111-2137895	110111-3851478	110111-7344677

■ 견본주택 위치 :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919-8번지

■ 분양문의 1800-2799

■ 홈페이지 : <https://www.prugio.com/hc/2021/singil>

※ 본 광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본 입주자모집공고 기재사항에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본 광고와 분양계약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분양계약서가 우선합니다.

※ 본 광고는 편집 및 인쇄과정상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견본주택으로 문의하여 재확인 하시기 바랍니다.